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65호

2018. 5. 17. (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21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
제421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
제421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
제421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19
제4220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0
제4221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3
제4222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45
제422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51
제422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제4225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53
제42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9
제422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3

[입법예고]

제2018-1224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0
제2018-124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4
제2018-1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5
제2018-125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6
제2018-125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7

◆ 고 시

제2018-1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88
제2018-153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9
제2018-154호 사육신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7
제2018-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결정 고시	115
제2018-157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5

◆공 고

제2018-1169호 감리업 등록 공고	130
제2018-118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30
제2018-1189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131
제2018-121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32
제2018-121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34
제2018-121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40
제2018-1221호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144
제2018-122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144
제2018-1227호 문화재수리업 등 합병공고	145
제2018-1231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공고	145
제2018-1237호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46
제2018-1245호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49

◆구고시

제2018-62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도봉구)	155
제2018-51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159
제2018-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60
제2018-37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174
제2018-1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초구)	185
제2018-75호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88

◆구공고

제2018-46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종로구) ...	194
제2018-47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광진구)	195
제2018-599호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성북구) ...	198
제2018-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공원)실시계획인가 고시(양천구)	198
제2018-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99
제2018-8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	201
제2018-820호 서초구 양재동 102-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203
제2018-74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재열람공고(송파구)	205

◆사업소고시

제2018-1호 표준 규격 출하품 지정 고시(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06
제2018-1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6
제2018-1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7
제2018-1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7
제2018-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8
제2018-1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8
제2018-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9
제2018-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09
제2018-1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10
제2018-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10
제2018-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11
제2018-1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11

◆사업소공고

제2018-11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12
--	-----

자 치 법 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21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1. 복무 및 품위	1. 복무위반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중 사적업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중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기타 당숙직 등 근무소홀 마. (삭제) (삭제) (삭제)					○ ○ ○ ○	○ ○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	○ ○ ○	
	마. 음주운전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 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 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 허가 취소된 경우에 는 음주측정 불응으 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를 포함한다.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경상해·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원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횟수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바. 교통사고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아. 폭력, 가혹행위 자.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차. 기타 품위손상					○ ○		
	3. 직무유기 등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 ○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 의무 위반 행위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 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8. 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					○ ○	○	
	9.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다. 기타 위반사항					○ ○	○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이란 불복절차를 통해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2. 청렴 의무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금품·향응수수 등 가. 100만원 미만 (1) 수동적이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수동적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능동적인 경우 나.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다. (삭제) 라. (삭제)							
3. 문서 및 관인 관리	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			○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			○		○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			
4. 예산회 계 및 물품 관리	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마. 물품 및 공사의 무단 분할발주계약 등 위법·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카.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작성 소홀 타. 대형공사 입찰담합방지 점검표 미작성					○ ○ ○ ○	○ ○ ○	
	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 ○	
5. 공사	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건설)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 ○ ○ ○ ○	○ ○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 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 ○	
6.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가.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나.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 다. 공사장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2.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가. 시설물의 주요부재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나. 시설물 손상의 1개월 이상 방치등 유지 관리소홀 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동일 시설물 파손이 동 일 장소에서 3번 이상 발생하여 재보수 라.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마.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					○ ○ ○ ○	○ ○	
7. 소송 업무	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	○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 일 불참 나. 입증자료 제출 태만					○	○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8. 세무 행정	1. 과세누락 또는 지연(고의 또는 중과실)					○		
	2. 과세물건의 조사 부당						○	
	3. 세무실사 위법·부당					○		
	4. 부당 과세							
	가. 과세표준액 부당적용					○		
	나. 세율계산 조작					○		
	5.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부당 지연						○	
	6. 체납처분 및 압류 태만						○	
	7. 압류 부당 해제					○		
9. 보건 환경	8. 과오납금 및 환불 부당처리						○	
	9. 결손처분 부당처리					○		
	1. 각종 위생업소의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2. 의약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3.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 소홀						○	
	4. 업태위반, 무허가업소 등 감시단속 조치태만						○	
	5. 행정처분업소 위반사항 묵인 방치						○	
	6. 행정처분 대상업소 적발 후 묵인 또는 경감조치					○		
	7.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극물 취급자와 취급의료 업소 및 약업소 등의 지도감독 태만						○	
	8. 응급환자 취급 부주의로 물의 야기						○	
	9.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						○	
	10.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		
	11.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12. 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법·부당 처리					○		
10. 산업 경제	13. 배출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소홀						○	
	1. 시장 위법·부당 허가					○		
	2. 시장 및 연탄제조업소 지도감독 소홀						○	
	3. 중소기업자금 지원 부당처리						○	
	4.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 불철저						○	
	5. 각종 행정처분 태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6.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 위법·부당 허가 7. 전기용품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록 위법·부당 처리 8.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인·허가 위법·부당 처리 9. 연료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단속 태만 10. 도시가스 안전관리 소홀 11. 부정도축 목인 방치 12. 정부 양곡 방출 지정 부당 13.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부당 14. 도매시장 관리 부당 15. 동물병원 및 의약품상 지도감독 소홀 16.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 이용 17.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18.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 유출					○		
						○		
						○		
							○	
							○	
						○		
							○	
							○	
							○	
						○		
							○	
						○		
							○	
						○		
11. 건설 및 도시 행정	1. 환지처분의 위법·부당 2. 도로, 하천 구거 공작물 설치 허가 및 준공검사 위법·부당 3. 보상금 지급 위법·부당 4. 도로, 하천 구거용지 점용허가 및 관리 위법·부당 5. 도로, 하천 등 점용 및 사용료 과징 위법·부당 6.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변경의 위법·부당 7. 도시계획 사업인가 및 준공 위법·부당 8. 개발행위허가의 위법·부당 9. 공공용지 용도폐지 위법·부당 10. 임야 개간허가 및 준공허가 위법·부당 11. 공원, 녹지, 그린벨트, 절개지 등 관리 소홀 12. 공원용지 사용허가 위법·부당 13. 토석채취 허가 위법·부당					○		
						○		
						○		
							○	
							○	
						○		
							○	
						○		
							○	
						○		
							○	
						○		
							○	
						○		
12. 건축 및 주택 행정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가. 구조의 안전 확인 소홀 나. 불안정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 다. 방화시설 내화구조 위반						○	
							○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 임 이 상	강 등 이 상	정 직 이 상	감 봉 이 상	견 책 이 상	
	라. 주차시설 위반						○	
	마. 피난시설 소화설비 기준 위반						○	
	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내의 제한규정 위반					○		
	사.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의 위법·부당					○		
	아. 건축선, 건축물 높이 위반					○		
	자. 용도지역 및 지구 위반					○		
	차. 건폐율, 용적률 위반					○		
	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위반					○		
	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 위법·부당 처리						○	
	파. 주상복합건물 등의 분양업무 소홀						○	
	2.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가. 건축위원회 심의상정업무 소홀						○	
	나. 건축위원회 운영 소홀						○	
	다. 건축심의조건 미이행						○	
	3. 건축물 관리소홀 등							
	가. 위법 건축물의 조치 태만						○	
	나.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소홀						○	
	다. 위법건축사 조치위반					○		
	라. 건축사 지도감독 소홀						○	
	4. 주택사업 승인·인가							
	가.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					○		
	나.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사업승인 위법·부당					○		
	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처리 부적정						○	
	라. 조합설립인가업무 부당처리					○		
	마. 정비사업 시행인가 부당처리					○		
	바.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업무 부당처리				○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무 부당처리						○	
	아. 공동주택 관리업무 소홀 등						○	
	5. 무허가 건물 관리							
	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태만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나. 향측원도 조작 또는 관리 부실					○		
	다. 향측판독 건물 미철거 및 불완전 철거					○		
	라. 특정 건축물 등 부당처리						○	
	마. 지상촬영 적출 위법건물 조치 위반						○	
	6. 광고물 관리							
	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준공위법 부당처리					○		
	나. 광고물 행정 지도감독 소홀						○	
13. 교통 행정	7. 주택, 건축 질의회신 부당처리					○		
	1.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소홀						○	
	2. 무허가 정비업소 지도단속 소홀						○	
	3. 운수업체 면허 및 노선지정 부적정					○		
	4. 운수업체 및 조합감독 소홀						○	
	5. 차량등록 및 말소 부적정						○	
	6. 구조변경 및 차대, 원동기 재타각 부적정					○		
	7. 정류소 설치, 이전 및 차고지 인가 부적정					○		
	8. 대폐차 및 번호변경 인가 부적정					○		
	9. 증차 및 명의변경 부당처리					○		
	10. 자동차 검사·등록 부적정						○	
	11. 국내여행 알선업 위법·부당 허가					○		
14. 소방 행정	1. 소방관련 건축 동의 업무							
	가. 소방시설 검토 누락 등 위법·부당 처리					○		
	나. 작동기능 불량 묵인 등 완공검사 태만						○	
	2.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 위법·부당 처리					○		
	3. 업종구분, 면적확인 등 소방대상물 관리 태만							
	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	
	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 부당교부						○	
	4.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소홀로 대형화재 유발				○			
	5. 소방특별조사(소방검사) 업무 소홀					○		
	가. 허위복명					○		
	나. 시정명령 미발부 등						○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6. 소방법 위반자 입건 유보					○		
	7. 기타 소방법 위반자 조치 태만						○	
15. 상수도	1. 검침 용역회사 지도감독 부적정					○		
	2. 관리 검침 소홀						○	
	3. 인정 조정 부당처리						○	
	4. 계량기 조작		○					
	5. 심사 부당						○	
	6. 계량기 부당 교체				○			
	7. 부정급수 단속 소홀						○	
	8. 무허가 급수업자 방치					○		
	9. 조례 위반사항 조치 부적정					○		
16.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음주와 직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2. 주요내용

가.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 시 징계 처분 강화

-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으로 한 단계 상향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21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 중 제15호 및 제16호를 삭제한다.

제120조제2항에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0조제4항 중 제7호를 삭제한다.

제120조제5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원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19. 공원관리변경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총괄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0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신규사무 소관 지정 등 기구조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

-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 의무화(' 18. 1월)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관련 사무 신설

나. 소속기관 소관 사무 조정

- 서울대공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사업무 소관 일원화 등 사무 조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218호****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8급 소계란, 간호조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757	222	48	83	1,403	1
간호조무	11				11	

같은 표 9급 소계란, 간호조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229	6	4	5	214	
간호조무	35				3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존 정원 직급 조정

2. 주요내용

총 정원 변동없이(18,144명) 직급 조정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관 내 직급조정(2명)

◆ **서울특별시규칙 제4219호****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변경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한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 시민소통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봉사 담당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 「여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 평생교육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 소 년 담 당 관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허가(목적·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다.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40조제1항)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40조제1항)	구청장

☐ 경제진흥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융합 경제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같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나.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 고의 접수 및 수리 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라.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 권말소 마.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 징금 부과·징수(체납처분 포함) 아.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7호·제9호 또는 같 은 조 제2항제4호·제6호의자목에 대한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같은 법 제30조제2항 ○ 같은 법 제31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제2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생경제과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라.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제4호·제5호) ○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구청장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나.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 제33조 ○ 「대외무역법」 제59조 ○ 「대외무역법」 제33조의2	구청장
	3.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4조제2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8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 「국유재산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구청장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 청취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20조	구청장
도시농업과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 「양곡관리법」(' 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구청장

☐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사무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 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가호·24퍼호·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구청장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 격심사 2.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 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4.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 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 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신고 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6조·제1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6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8호)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9호)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호)	구청장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4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1 제2호부터 제4호)	구청장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및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청장
	10.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6호)	구청장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7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3.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 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구청장
	13-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구청장
	13-3. 내암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4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4.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구청장
	14-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의2)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의3호)	구청장
	16.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구청장
	16-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구청장
	18.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품질시험 소장
	19.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구청장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다. 허가기준에 관한 항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 같은 법 제11조제1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아. 상속의 신고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 같은 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타. 허가취소 청문 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하. 화물운송종사 자격에 대한 청문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1호) ○ 같은 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 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 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 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3호)	구청장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바. 개선명령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아. 상속의 신고 자.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차. 허가취소 청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 ○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호) ○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 같은 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2호) ○ 같은 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구청장
	2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일반택시·운송사업·화물)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 「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8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같은 규칙 제1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제1항제5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2항,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구청장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다. 개선명령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구청장
대기관리과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3.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 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다.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라.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다목) ○ 같은 법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라목) ○ 같은 법 제45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마목) ○ 같은 법 제8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2호바목) ○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1항제8호(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5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다. 표지판의 설치 라.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마. 자료제출의 요구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3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사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31조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다목)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아.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19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19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 ○ 같은 법 제2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 ○ 같은 법 제2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8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0호)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구청장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나.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다. 금고의 합병인가 라. 금고에 대한 명령 마. 청문	○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및 제74조의3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2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37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74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제83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구청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경 사항 라. 법인관련 지도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민법」 제37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나. 변경신고의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라. 보고명령·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마. 검사명령 바. 회수·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합·봉인 등의 처분	○ 「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신고수리서 갱신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56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제3항	구청장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구청장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가목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라.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바. 시정명령·지시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나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다목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구청장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 (도로 및 구거에 한함) 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국유재산법」 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 「국유재산법」 3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같은 법 제35조(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축사업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수리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라. 보고 및 검사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바. 처분내용의 통지 2. 승강기 검사업무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 「건축사법」 제23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4호) ○ 같은 법 제28조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6호) ○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 같은 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구청장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호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방지의 지정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라. 사방사업의 시행 마.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바. 공무원의 조사 등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아. 수익의 귀속 자. 공부의 비치	○ 「사방사업법」 제4조 ○ 「사방사업법」 제6조 ○ 「사방사업법」 제20조 ○ 「사방사업법」 제5조 ○ 「사방사업법」 제7조의2 ○ 「사방사업법」 제9조 ○ 「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 「사방사업법」 제17조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나.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다.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마.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회석 처리에 관한 인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35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 ○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차.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같은 법 제44조(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파.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하.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거. 같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너.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자료제출 요구출입·채취·검사 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러.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쳐.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 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0호) ○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1호) ○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2호) ○ 같은 법 제44조·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 같은 법 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4호) ○ 같은 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6호) ○ 같은 법 제6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7호) ○ 같은 법 제60조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 같은 법 제68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3호) ○ 같은 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4호) ○ 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5호) ○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2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81조제1항제2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제1항제2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2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제1항제3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제1항제31호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커. 배출시설의 인정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나. 이행여부의 확인 다. 이행명령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제1항제32호)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 같은 법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49조	구청장 구청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반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 「하천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라목) ○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사목) ○ 같은 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1호 아목) ○ 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제1호자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 보고 및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차.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 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그에 따른다)의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 (부수 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마.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귀속 협의	○ 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파목) ○ 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카목) ○ 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마목) ○ 같은 법 제91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하목) ○ 같은 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너목)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제3호) ○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3호) ○ 「국유재산법」 제30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72조, 제7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2. 소방용 기계·기구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기관위임사무의 자치구 재위임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 무상 귀속 협의 권한 위임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0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본청·사업소·직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지표의 개발)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범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및 진행, 완료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고르게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공정한 심의·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 18. 3. 22.자로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

나. 시범사업의 대상기관 및 적용범위, 평가지표의 개발 등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칙으로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행정기구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적용범위 명시

※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시장은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지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다. 시장은 시범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라. 위원회는 시범사업 운영과정 중 심의·자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며 회의의 종료시 해산

마.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 평가, 평가의 환류 및 확산 등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 수행

바.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구성하며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사.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시민 등을 고르게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인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

아. 기타 위원장 선출, 의사정족수, 간사, 회의록, 출석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1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2.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한다) : 10만원

제3조(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에 관계서류(이하 “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지급예정일·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3조제1항의 당사자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비용지원청구서

1. 청구인 인적사항 등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명		사건번호	
	재결기관		재 결 일	
3. 청구액	금 원 (₩)			
4. 청구액 산출 내역	행정심판 청구사건	원		
	집행정지 신청사건	※ 집행정지 사건번호: 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중				
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1부.(해당인 있는 경우에 한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기준, 청구 서식,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액

(1)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2) 집행정지 신청사건 : 10만원

나. 비용지원청구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다. 청구서 등(비용지원청구서 및 관계서류)의 보완, 지원금의 지급여부 결정 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비용지원을 받은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등 확인 의무 부여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2호****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재개발(“재개발”이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
- 마.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 사. 정보시스템 감리
- 아.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 자.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기획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주된사업”이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용컴퓨터(PC), 모니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2장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전략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화 환경 분석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 분석
 3. 목표시스템 분석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제5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

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 다. 기대효과
 - 라. 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4.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5.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및 조례 제7조의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화사업의 발주

제8조(발주금액 산정기준)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예산편성 지침 및 사업대가 산정기준

제9조(사업계획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발주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요청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여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4. 추진체계
5.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의 기술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2.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여부

3.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4.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제도 준수여부
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의 선임 및 회의의 운영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에서 정하는 규정 및 기준 등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세부기준을 정한다.

제15조(계약체결)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의 관리 및 검수

제16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검사 및 인수)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 및 인수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관리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추진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사업 감리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정보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규칙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을 명시함

나. 정보시스템 감리 시행 주체를 변경함

- 감리 시행 주체를 정보기획관(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로 변경함

다. 정보화사업 관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제정에 따른 사전협의 규정을 변경함

- 예산타당성 검토를 예산타당성 심사로 용어를 변경함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2조 다음에 “제9절 다면평가”를 삽입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각각 제67조 및 제68조로 하고, 제63조 및 제6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2회 시행하되, 상·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평가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5급 이하인 경우 :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장·담당관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4급 이상인 경우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장급 3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

⑤ 시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구분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제69조 및 제70조로 하고,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다면평가 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

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피평가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기타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신체검사 규정 조항이 국가 방호 직렬 채용 시 신체조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에 따라 서울시 다면평가의 운영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인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삭제(제19조제3항, 별표4의2)

- 지방방호직렬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신체검사 규정이 국가직 방호직렬보다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준이 차별 조항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 제19조제3항, 세부 조건 별표 7의2를 삭제

나. 다면평가 운영 관련 근거 마련(제63조~제6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및 「지방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규칙에 신설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공면적,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 면적”을 “제공면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 기준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상업지역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에서 도시의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지정한 중요지역으로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계획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나.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중심기능 역할 강화, 저층부 가로 활성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의무화함(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5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보조·용자대상 및 용자지원조건) ①「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대상인 외관과 내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보조대상) :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
2. 내부(용자대상) :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 내부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용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용자업무 수수료는 용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용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사 완료 전 우수건축자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용자지원(변경)신청서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용자지원(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 규정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용자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완료신고 등) ①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공사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 제27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한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날까지
2.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 한옥의 소유자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날까지
3.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날까지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의무 승계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한옥 수선 등의 용자지원조건)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선 등(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용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 상환일은 매 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용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1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용자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1. 한옥 수선 등(한옥 지붕 부분수선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보조 및 용자지원 신청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지원 신청(변경신청 포함) : 별지 제8호서식
3. 한옥건축양식의 용자지원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용자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용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한옥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한옥 수선 등의 현장조사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옥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인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 ① 한옥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한옥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 완료 전 한옥 수선 등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한옥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
2. 한옥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17조(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범위)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철거·멸실 여부,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1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용자지원금 지급 및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환수
2. 용자지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한옥위원회” 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로 한다.

[별표]

한옥 수선 등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한옥 수선 등 기준
한옥 외관	한옥의 지붕	· 지붕은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기와를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으로 하고, 맞배지붕을 설치할 경우 목기연과 박공을 설치한다. · 처양을 설치할 경우 동판 등을 사용하되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한다.
	한옥의 외벽	· 도로와 면하는 외벽은 상부, 중부, 하부로 구성하고, 상부는 창호와 회벽으로 하고, 중부는 붉은 벽돌과 사고석으로 하며, 하부는 장대석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 목조기둥의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는 외벽에 묻어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한 한옥을 고려하여 목조기둥 전체를 노출 할 수 있다. · 도로와 대지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축대 부분에 차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한옥의 담장	· 담장 계획 시 주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한옥 외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장대석 사고석, 붉은 벽돌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문간	·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대문의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한옥의 입면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아크릴 한지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동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한옥의 입면은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한다.
	한옥의 방재	· 수선 및 신축 시 기둥, 서까래 등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우드스테인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옥의 개보수나 신축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
	기타	· 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한옥 내부	설비 방식	· 난방설비는 온수 순환난방방식이나 전기 온돌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 보일러실은 지하 또는 문간채에 설치하고, 채와 담장 사이에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실의 높이는 담장선 보다 낮게 하여 처마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벽체는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되, 목재기둥의 폭을 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마감은 회벽을 권장한다.
	부역의 구조	· 바닥높이를 조정하고, 입식부역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 부역 상부공간을 이용하여 다락을 설치하거나, 지하를 이용하여 방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화장실과 목욕실의 구조	·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 목욕실과 함께 안방 뒤편이나, 문간채 또는 장독대 하부 등 적절한 위치에 시설한다.
	기타	· 상기 공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 등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용자지원 (변경)신청서(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보조·용자지원 (변경)신청서						
☐ 우수건축자산 ☐ 한옥건축양식		공사구분 (신축, 신축 외)		총 공사비		원
				외관공사(보조)		원
				내부공사(용자)		원
지원신청 요청금액	보조금	원(외관 공사비의 %)				
	용자금	원				
건축주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용자지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및 건물의 소유(대지는 사용 포함)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4. 공사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제5조제1항 관련)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우수건축자산 공사 완료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우수건축자산 공사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옥 ☐ 비 한 옥				
	대지 면적	m ²		연 면 적	m ²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공사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내 부	☐ 부엌 ☐ 화장실 ☐ 기타()		
	☐ 신 축		☐ 개 축(☐ 전체 ☐ 부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전자파일)>			건축물대장	수수료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없음	
한옥소유자 한옥등록 신청서 제출 → 구청장 한옥등록 요청 → 시 장 한옥등록필증교부 관련서류검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한옥등록필증(제7조제3항 관련)

한 옥 등 록 필 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 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용 도		구 조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m ²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제8조제1항 관련)

한옥등록 관리대장		관리번호 □□□□ - □□□□			
한옥등록번호					등록일
대지위치					
건축주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대지 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용도	
	구조			건설일	
향후 수선 등 계획			보조·용자 지원 내용		
현황 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제9조제2항 관련)

권리 · 의무 승계서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연 면 적	㎡	용 도	
보조·융자 지원현황	보 조 금		보조금 교부일	
	융 자 금		융자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	구 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인) (전화 :)
	성별/생년월일	/		/
	주 소			
	내 용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내용과 지원 조건을 인지하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한옥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 (변경)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 (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건축주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m ²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공사내용	수선범위	지붕공사 (면적)			
		서까래 (교체수량)		기와 (교체수량)	
	수선내용				
	총 공사비				
지원신청 요청금액	이전 지원내용				
	보조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현황사진(한옥수선 대상을 중심으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한옥 수선 등 착수신고서(제13조제1항 관련)

한옥 수선 등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한 옥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제15조제1항 관련)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						
한 옥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 무 소 주 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수수료
	2. 한옥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병행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폐합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축자산의 지원대상, 착수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사유 등을 정함(제2조부터 제6조까지)

- 조례에서 위임한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용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정함
- 조례에서 위임한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우수건축자산의 보조·용자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 등을 정함
-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 및 완료신고 방법 및 서식 등을 정함

나. 한옥등록 및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을 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한옥등록 신청서 및 한옥등록필증, 한옥등록 관리대장 서식을 정함
- 조례에서 위임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정함

다.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및 한옥 수선 등의 용자지원조건, 착수 및 완료신고,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사유 등을 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조례에서 위임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및 한옥 수선 등의 용자지원조건 및 상환조건을 정함
- 한옥 수선 등의 보조·용자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 등을 정함
- 한옥 수선 등의 착수 및 완료신고 방법 및 서식 등을 정함
- 조례에서 위임한 공사 완료 전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라. 지원받은 한옥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행정조치를 할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함(제17조)

마. 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함(제18조)

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제19조)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환불할 수 있으며 당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를 “별표 4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이용일” 을 “이용 당일”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토,일,공휴일은 이용 금액의 30% 가산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토. 일.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 금액은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 3,000 2,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야영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캠핑 1회당	18,000		
			중랑캠핑숲 1회당	25,000		
			전기이용료 1회당	3,000		
	야영장 물품대여료		일반 야영텐트 1회당	5,000		
			중랑캠핑숲 야영텐트 1회당	10,000		
			1인용 매트 1회당	1,00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초과 시간당	6,500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		
	국궁장		1일(3시간)	3,000		
			1개월	3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남 산 공 원	남산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6,000		◦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 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 환경친화적 차량(CNG,CNG하이브리드, 전기사용자동차) 또는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남산 차량통행료의 50%를 감면한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4,000		
서울 대공원	돌고래쇼장 관람료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어린이 대공원 · 서울숲	야외무대 이용료	주간 1회 2시간	100,000		◦공원이용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야간은 주간의 2배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 금액의 50%
종량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10,000 7,000 5,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불암산	더불어숲 (챌린지 로우코스)	어른 1회당	10,000		◦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30인 이상) － 단체 할인 적용시 별도 할인 미적용 (코스연계 할인 미적용) ◦ 2개 코스 이상 이용시 10% 할인 ◦ 챌린지액티브코스는 터널메이즈와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팩스로 구성되며 개별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음 － 터널메이즈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팩스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청소년 1회당	7,000		
		어린이 1회당	5,000		
더불어숲 (챌린지 하이코스)	어른 1회당	8,000			
	청소년 1회당	6,000			
	어린이 1회당	4,000			
더불어숲 (챌린지 액티브코스)	어른 1회당	8,000			
	청소년 1회당	6,500			
	어린이 1회당	5,000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 전기료 별도 ○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 추가 주차 시 별도 요금 징수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구분 ▷(11월~2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4:00 ▷(3월~10월) — 주간 : 09:00 ~ 19:00 야간 : 19:00 ~ 24:00					

[별표 4]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국궁장 이용 및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에 대한 세부 이용료를 신설하고, 공원이용 시설 이용 예약 취소율을 낮추어 실사용자 위주의 예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에 대해 차등적 환불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궁장 이용료 신설 : 1일(3시간) 3천원, 1개월 30천원

나. 입장권 발매행사 이용료 신설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해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다.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 환불 규정 : 취소일자에 따라 전액환불(당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80% 공제후 환불(당일 1일전)로 차등 기준 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227호**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 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사가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시민안전과수꾼 교육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전문 강사의 선발 등) ① 시민안전과수꾼 초기대응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는 이수과목별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시민전문강사 :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발된 강사
2. 내부전문강사 :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된 강사
- ② 전문 강사의 교육과목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사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사람을 전문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시장은 시민전문강사로 위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 강사의 배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초기대응교육에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 강사를 우선 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 강사가 진행하기 곤란한 전문영역 등 특정 분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되지 않은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5조(교육내용의 검토 및 보수교육 등 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강사로부터 과목별 강의 교안을 제출 받아 이수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간담회 또는 보수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문 강사의 해촉 등) 시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보수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 강사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 강사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교육운영(행정, 실습 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문 강사의 강의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강사를 배치한다.

② 보조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발한다.

1. 초기대응교육 기본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시민안전과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
2. 그 밖에 시민안전과수꾼 정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에 참여하는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및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이 초기대응교육 이외 민관협업 및 정책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초기대응교육 운영세칙)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의 선발, 강사 자격평가, 강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안전과수꾼 정책자문단의 기능) 조례 제8조에 따른 시민안전과수꾼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민안전과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
3. 시민안전과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등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행정,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수꾼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⑤ 제10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단순 자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자 등 의견 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자문단 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문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안전과수꾼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①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에게 재난 등 위기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재난관련 정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수꾼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안전과수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자격사항
3. 교육이수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수꾼이 재난 초기대응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정보 공지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기대응교육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교육과목	세부과목	교육시간
기본교육	위기상황판단	안전의식 함양	2시간
		위기상황판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3시간
		그 밖의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재난대응기본원칙	3시간
		초기대처요령	
심화교육	테마별 재난대응	대상별 재난대응요령	4시간
		장소별 재난대응요령	

[별표 2]

전문 강사의 교육과목별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기본교육과정 교육과목별 자격기준

교육과목	자격기준
위기상황판단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표준행동요령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응급처치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나. 그 밖에 가목의 자격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

생년월일 :

이수일자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초기대응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 ○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로 임명(위촉)합니다.

(유효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시민안전과수꾼 양성 및 운영에 따른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 사항,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운영, 정책자문단 기능과 구성 및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과수꾼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을 규정함(제2조)
- 나.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운영, 보조강사 육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시민안전과수꾼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시민안전과수꾼에게 재난초기정보공지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제16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24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2018년 5월 17일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역세권계획팀장 김승수, 담당 조성국							
4. 근거법령명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 련 규제수		2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1. 개정조례안 제6조의 사업유형에서 제3호의 도시환경정비사업(현행법상 재개발사업)을 삭제함. 2. 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사업시행자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와 대상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화함.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1) 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동 법에는 사업유형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환경정비사업(현행법상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2016년 7월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청된 사례가 없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계자의 혼란만 가중시킴.

2) 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 현행 조례는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와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업계획 작성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 항에 규정하였고, 사업계획 제출이 필요적 사항임에도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계자에게 혼란을 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1) 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사업유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혼란 제거 필요

2) 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와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업계획 작성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을 필요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법적 혼란 제거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계자에게 명확한 규정 제공 및 혼란 제거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해당 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 및 절차, 법적근거 등을 명확히 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함

III.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해당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시행(’18. 7. 17.)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코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자의 유형을 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사업부지가 역세권 범위에 과반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라. 유형별 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위원회를 세분함(안 제5조 및 제12조)

마. 사업유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삭제함(안 제6조제3호)

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유형별로 구분함(안 제7조제2항)

사. 사업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경우 시장에게 공공기여 해야 하는 비율을 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함(안 제7조제3항)

- 아.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사업계획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 및 구체화함
(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 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법 제44조에 따르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
- 차.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안 제13조제1항)
- 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타. 사업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추가로 정함(안 제14조제2항)
- 파. 통합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자문·심의사항을 조정함(안 제19조제2항)
- 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 공무원의 직급을 4급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20조제2항)
- 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임대주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2133-4934, FAX: 2133-0751, E-mail: skcho8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4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립대에 총장 직속의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학내 성평등 및 인권보호 기구 및 제도 강화를 통해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 권익침해 시 신속하고 중립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에 총장직속의 인권센터 설립(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직속기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그 직속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8, FAX: 02)2133-0822, E-mail: netian22@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브랜드위원회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위원 임기 변경

2. 주요내용

새로 구성되는 서울브랜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현행과 동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6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브랜드담당관(전화 : 02)2133-6194, FAX:02)2133-0862 E-mail : leju@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5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책 추진 책임성 강화 및 역량집중을 위해 관련 사무를 해당 실국의 소관사무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 관련 총괄 조정 기능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2133-6724, FAX : 2133-0822, E-mail :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5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윤 준 병 인

2018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8,144명에서 18,167명으로 23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 23명

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직급조정

: 본청 5급이하 △1 → 본청 4급 +1

다. 납세자보호관 지정·운영을 위한 관리기관 간 정원 이관

: 본청 5급이하 △1 → 합의제행정기관 5급이하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24, FAX: 2133-0822, E-mail: jspark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2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종별	지정 번호 및 명칭	보유자			
		성명 (분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한영서 (樂師)	남	1947.10.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이하 생략)

2. 인정일 : 2018.5.17

3. 인정사유

○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악사 분야) 보유자 : 한영서

- 악사 한영서는 오랫동안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에 악사로 참가하여 서울마을굿 음악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기량 또한 뛰어남. 2010년 2월 23일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받은 이후 후진 양성 및 전수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남이장군사당제보존회 회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신뢰도가 높음. 현재 서울굿판에 뛰어난 악사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량이 뛰어나고 전승활동이 원활한 한영서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보유자(악사 분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한영서가 2018년 5월 17일자로 보유자로 인정됨에 따라, 한영서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제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06.0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0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0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0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0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0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01.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	385,356.7	감)4.2	385,352.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 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II.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III.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IV.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6.7	감) 4.2	385,352.5	100.0	
개발용지	소 계	244,213.5	-	244,213.5	63.4	-
	첨단업무복합	73,247.0 [5,684.0]	-	73,247.0 [5,684.0]	19.0	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 배치조정
	첨단업무지원	38,591.0	-	38,591.0	10.0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상업업무복합	94,995.0	-	94,995.0	24.7	
	주 거 복 합	37,380.5	-	37,380.5	9.7	
공공용지	소 계	141,143.2	감) 4.2	141,139.0	36.6	
	공공문화복합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공 원	13,473.7	-	13,473.7	3.5	문화공원 선형조정
	광 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1,293.4	-	1,293.4	0.3	
	주 차 장	1,037.0 (2,820)	-	1,037.0 (2,820)	0.3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입체공공시설	1,900.0	-	1,900.0	0.5	복합문화시설
	도 로	107,131.0	감) 4.2	107,126.8	27.8	자양4구역 면적 정정

※ []는 용지내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

※ ()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임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정정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700	증) 6	3,706	9,767	증) 16	9,783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58	증) 6	2,664	7,016	증) 16	7,032	세대당 : 2.64인
	60㎡ 이하	1,153	-	1,153	3,044	-	3,044	
	85㎡ 이하	1,218	감) 58	1,160	3,215	감) 153	3,062	
	85㎡ 초과	287	증) 64	351	757	증) 169	926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 정비구역	소계	-	-	-	-	-	-	
	60㎡ 이하	-	-	-	-	-	-	
	85㎡ 이하	-	-	-	-	-	-	
	85㎡ 초과	-	-	-	-	-	-	
존치 관리구역	-	1,042	-	1,042	2,751	-	2,751	기존세대 수용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1,143.2	감) 4.2	141,139.0	36.6	
교통시설	소 계	108,168.0 (2,820.0)	감) 4.2	108,163.8 (2,820.0)	28.1	
	도 로	107,131.0	감) 4.2	107,126.8	27.8	자양4구역 면적 정정
	주차장	1,037.0	-	1,037.0	0.3	
	(공원지하주차장)	(2,820.0)	-	(2,820.0)	(0.7)	
공간시설	소 계	16,664.2	-	16,664.2	4.3	
	공 원	13,473.7	-	13,473.7	3.5	문화공원 선형조정
	광 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1,293.4	-	1,293.4	0.3	유치원 예비용지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 계	16,311.0 (5,684)	-	16,311.0 (5,684)	4.2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1,900.0	-	1,900.0	0.5	
	광진구청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입체적공공시설 (공공청사)	(5,684)	-	(5,684)	(1.4)	광진구 통합청사배치 조정

※ ()는 공원부지 지하에 중복결정되는 주차장 면적 및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공공공지(유치원 예비용지)는 사업시행 인가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위치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정정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

구분	명 칭	개 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	－	10	16,664.2	－	16,664.2	
공 원	소 계	5	－	5	13,473.7	－	13,473.7	
	소공원	2	－	2	1,118.0	－	1,118.0	
	주제공원	3	－	3	12,355.7	－	12,355.7	문화공원 선형조정
광 장		2	－	2	1,897.1	－	1,897.1	
공공공지		3	－	3	1,293.4	－	1,293.4	

5) 교통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공람도서(Ⅰ.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공람도서(Ⅰ.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도시환경정비에정구역

지구명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 자 양 재 정 비 촉 진 지 구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	-	78,147	전면개발	
	변경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감) 4.2	10,812.2	전면개발	면적 정정
	기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전면개발	
	기정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	-	55,151	전면개발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정정

○ 구역별 계획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주용도	사업방식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	최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60 이하	173	492.9	업무,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감) 4.2	10,812.2	60 이하	321	500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0	-	55,151.0	60 이하	164	399	업무,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60 이하	250	400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정정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85,356.7	감)4.2	385,352.5	100.0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	169,252.0	감)4.2	169,247.8	43.9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20.3	도시환경정비	-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7번지 일원	15,266.0	-	15,266.0	4.0	도시계획시설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감)4.2	10,812.2	2.8	도시환경정비	면적 정정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5,151.0	-	55,151.0	14.3	도시환경정비	-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2.6	도시환경정비	-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	151,091.0	-	151,091.0	39.2		-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 일대	1,133.0	-	1,133.0	0.3	지구 단위 계획	-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 일대	1,805.0	-	1,805.0	0.5		-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 일대	9,506.0	-	9,506.0	2.5		-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 일대	5,823.0	-	5,823.0	1.5		-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 일대	1,098.0	-	1,098.0	0.3		-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 일대	2,024.0	-	2,024.0	0.5		-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 일대	6,100.0	-	6,100.0	1.6		-
	자양8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8번지 일대	3,491.0	-	3,491.0	0.9		-
	자양9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7,824.7	-	47,824.7	12.4		-
	자양10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8번지 일대	2,649.0	-	2,649.0	0.7		-
	자양1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6-11번지 일대	7,821.9	-	7,821.9	2.0		-
	자양1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8번지 일대	7,331.4	-	7,331.4	1.9		-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 일대	7,718.0	-	7,718.0	2.0		-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 일대	7,593.0	-	7,593.0	2.0		-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 일대	10,611.0	-	10,611.0	2.8		-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 일대	8,379.0	-	8,379.0	2.2		-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 일대	17,706.0	-	17,706.0	4.6		-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 일대	2,068.0	-	2,068.0	0.5		-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 일대	409.0	-	409.0	0.1		-
기타 존치구역(도로)		-	65,013.7	-	65,013.7	16.9	-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정정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최대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재정비 촉진구역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73	492.9	- / -	150	변경없음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업무	60이하	400이하		- / -	100	변경없음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321	500 (444)	- / -	100	변경없음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업무,주거	60이하	164	399	- / -	100	변경없음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주거	60이하	250	400	- / -	100	변경없음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기정)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52	113,413.8	61,522.2	29,901.7	8,332.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067.2 (-14,319.8)	27.2 (-8.5)
촉진 구역	소 계	169,252	113,413.8	61,522.2	29,901.7	8,332.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067.2 (-14,319.8)	27.2 (-8.5)
	자양1 재정비촉진 구역	78,147	58,614	25,217 {26,584}	15,401	4,132	-	5,684 [5,646] {7,051}	-	- (4,112)	- (12,394)	25,217 (8,711) {26,584}	32.2 (11.1) {34.0}
	자양3 재정비촉진 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14,318	-	-
	자양4 재정비촉진 구역	10,816.4	8,315.4	2,501	1,566	862	73	-	-	24.6	164.4	2,312	21.4
	자양5 재정비촉진 구역	55,151	38,591	16,560 {20,406}	11,090	2,820 [5,640] {4,327}	750	-	1,900 [5,900] {4,239}	- (13,466)	- (30,415)	16,560 (-27,321) {20,406}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 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주1)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47.8	113,413.8	61,518.0	29,897.5	8,332.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063.0 (-14,324)	27.2 (-8.5)
촉진 구역	소 계	169,247.8	113,413.8	61,518.0	29,897.5	8,332.1	1,293.4	20,095 [5,646]	1,900 [5,900]	972.6 (18,550.6)	14,482.4 (57,291.4)	46,063.0 (-14,324)	27.2 (-8.5)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58,614	25,217 {26,584}	15,401	4,132	-	5,684 [5,646] {7,051}	-	- (4,112)	- (12,394)	25,217 (8,711) {26,584}	32.2 (11.1) {34.0}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14,318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소공원 862	73	-	-	24.6	164.4	2,307.8	21.3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55,151	38,591	16,560 {20,406}	11,090	2,820 [5,640] {4,327}	750	-	1,900 [5,900] {4,239}	- (13,466)	- (30,415)	16,560 (-27,321) {20,406}	30.0 (-49.5) {37.0}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주1) []:입체공공시설, 공공청사, 지하주차장의 건축 연면적

주2)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1,367㎡), 자양5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2,339㎡) 및 지하주차장(1,507㎡)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구역별 기반시설분담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은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설치

※ 계획기반시설 면적중 개발용지내 입체복합화 시설은 대지지분면적임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및 촉진구역의 소계와 합계의 정정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기 정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행복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658	1,555	803	562	241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58	1,555	803	562	241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57	625	432	289	143	-	30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840	538	302	233	6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 변 경

구분		계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행복주택 (세대)
				소계	전용면적 6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합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2,664	1,561	803	562	241	—	300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363	631	432	289	143	—	300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	—	—	—	—	—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264	215	49	40	9	—	—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840	538	302	233	69	—	—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197	177	20	—	20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 기 정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7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3단계	2019년	2020년	2025년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 경

구 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8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3단계	2019년	2020년	2025년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기간의 정정

14) 광고물 관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17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6) 방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19 방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20 정보화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

(I. 21 에너지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8,147	—	78,147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9,533	—	19,533	25.0	—
	도 로	15,401	—	15,401	19.7	—
	공 원	4,132	—	4,132	5.3	선형조정
	문 화 시 설	—	—	—	—	—
획지	소 계	58,614 [5,684]	—	58,614 [5,684]	75.0	
	획 지 1-1	58,614 [5,684]	감) 3,095	55,519 [5,684]	71.0	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 배치조정
	획 지 1-2	—	증) 3,095	3,095	4.0	행복주택

※ []는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54	25~ 38	보조간선 도로	264 [675]	자양동781-4 [자양동216-26]	자양동245-12 [구의동244-6]	1966.6.21	아차산로 (구의로)
기정	중로	1	450	25	보조간선 도로	152 [435]	자양동683-9 [자양동680-72]	구의동592-39 [구의동592-39]		독섬로 (등서울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51	20	집산도로	423	구의동592-39	자양동781-1		아차산로 58길 (새마을길)
기정	중로	2	479	14	집산도로	157 [434]	자양동680-81 [자양동716]	구의동591-29 [구의동591-29]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자양1구역내 내부도로 폭원축소
기정	중로	2	480	18	집산도로	332 [408]	자양동680-81 [자양동683-6]	자양동781-4 [자양동781-4]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공 원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	소공원	자양동 216-1 일대	256	-	256	서고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 일대	605	-	605	-	
변경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 일대	3,271	-	3,271	서고제2009-225호 (2009.6.4)	선형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332호 (2017.9.14)	광진구 통합청사 배치조정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연면적	32,908	-	32,908		

※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연면적은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자양1 재정비 촉진구역	78,147	-	58,614 [5,684]	자양동 680-63 번지 일대	15	-	-	15	-	

※ []는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건축시설계획

■ 기 정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78,147	-	58,614 [5,684]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10,000 이하	업무, 주거	60 이하	492.9 이하	150 이하
건축물 용도별 비율 (지상연면적 기준)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등
				합계	판매	숙박	합계	일반업무 (오피스텔 5%)	공공 업무	
			48.1%	11.7%	6.6%	5.1%	35.0%	25.4%	9.6%	5.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일반주택 : 625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06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419세대 · 임대주택 : 432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4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89세대 · 행복주택 : 300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00세대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46.0% · 임대주택 : 31.8% · 행복주택 : 22.2% ○ 건립예정세대수 : 1,357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는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연면적은 지상·지하 연면적 포함 면적임

■ 변 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자양1재정비 촉진 구역	78,147	1-1	55,519 [5,684]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10,000 이하	업무, 주거	60 이하	492.9 이하	150 이하	
			1-2	3,095							
건축물 용도별 비율 (지상연면적 기준)			주거		상업			업무			교육·연구, 문화·집회등
					합계	판매	숙박	합계	일반업무 (오피스텔 5%)		
			48.1%	11.7%	6.6%	5.1%	35.0%	25.4%	9.6%	5.2%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일반주택 : 631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270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361세대 · 임대주택 : 432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 143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289세대 · 행복주택 : 300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300세대 ○ 건설비율 · 일반주택 : 46.3% · 임대주택 : 31.7% · 행복주택 : 22.0% ○ 건립예정세대수 : 1,363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는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연면적은 지상·지하 연면적 포함 면적임

(4)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결정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8년	토지등소유자	1,258	이상없음	현황세대 (99)
변경				1,264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마)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6.7	감) 4.2	385,352.5	2006.10.19 (서고제2006-357호)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6.7	감) 4.2	385,352.5	100.0
주거지역	소 계	314,132.7	감) 4.2	314,128.5	81.5
	제1종일반주거지역	50,284.0	-	50,284.0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53.0	-	2,953.0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7,230.0	-	7,230.0	1.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주거지역	200,306.5	감) 4.2	200,302.3	52.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0	-	71,224.0	18.5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의 정정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 200,306.5㎡	준주거지역 : 200,302.3㎡	· 단순 착오에 의한 자양4 재정비촉진 구역 면적의 정정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 (1) 도 로 (변경없음)
- (2) 주차장 (변경없음)
- (3) 철도 (변경없음)

(4) 광장 (변경없음)

(5) 공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	소공원	자양동 776-5일대	862	-	862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②	-	소공원	자양동 216-1일대	256	-	256	"	
기정	③	-	소공원	자양동 680-83일대	605	-	605	서울시고시 제2017-332호 (2017.9.14)	
기정	④	-	문화공원	자양동 680-81일대	2,820	-	2,820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중복결정 • 지상 : 문화공원 • 지하 : 주차장 - 지하1 ~ 2층
변경	⑤	-	문화공원	자양동 680-63일대	3,271	-	3,271	"	선형변경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문화공원	· 선형변경	· 아차산로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저층부) 전면배치에 따른 선형 조정

(6) 공공공지 (변경없음)

(7) 공공청사 (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자양동 680-65일대	44,728	-	44,728	서울시고시 제1985-847호 1985.12.13	우편집중국
기정	③	공공청사	구의동 777일대	14,318	-	14,318	2009.6.4	現광진구청

■ 건축물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50%이하		150%이하		4층이하		우편집중국
③	60%이하		400%이하		100m이하		現광진구청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④	공공청사	자양동 680-63 일대	대지지분	5,684	-	5,684	서고 제2017- 332호 2017.09.14	광진구 통합청사 배치조정
				층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	지하1~2층, 지상25층 이 하		
				연면적	32,908	-	32,908		

※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연면적은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공공청사	· 배치조정	· 통합청사(구청사, 보건소, 구의회)건축물의 기 능별 분리 배치에 따른 배치조정

(8) 문화시설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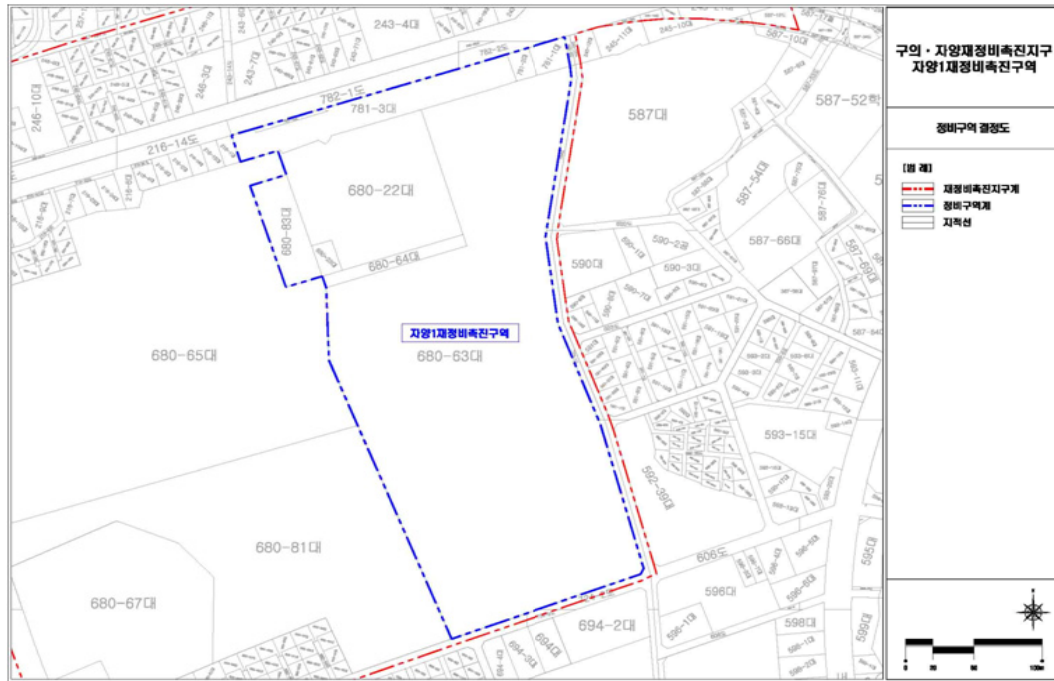
IV.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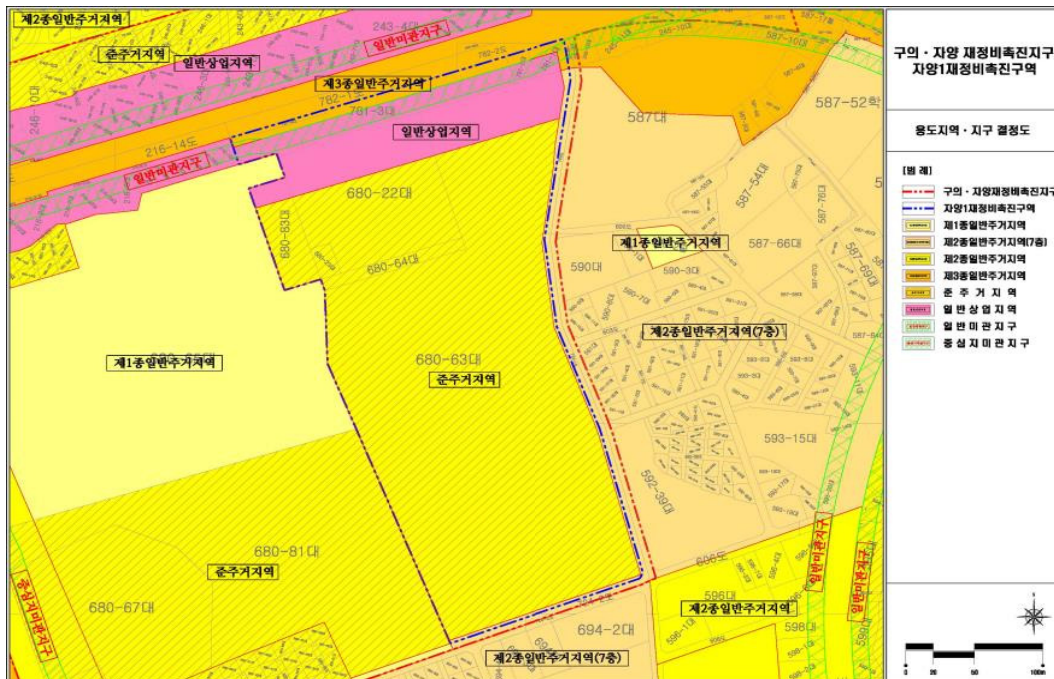
V.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 도서로 갈음)

VI.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 02-450-769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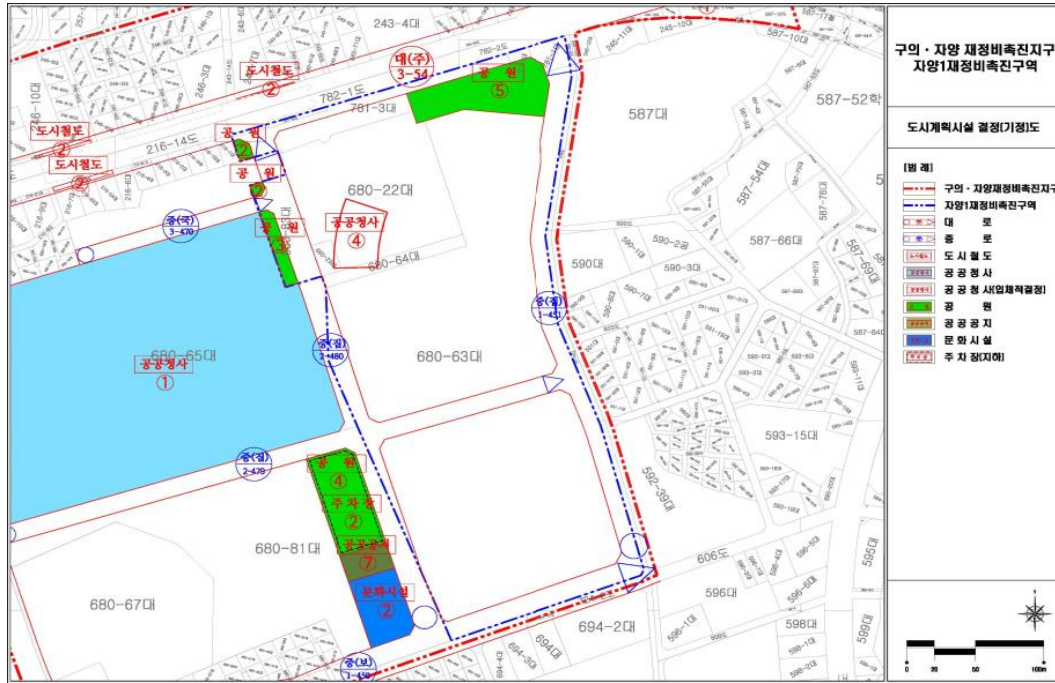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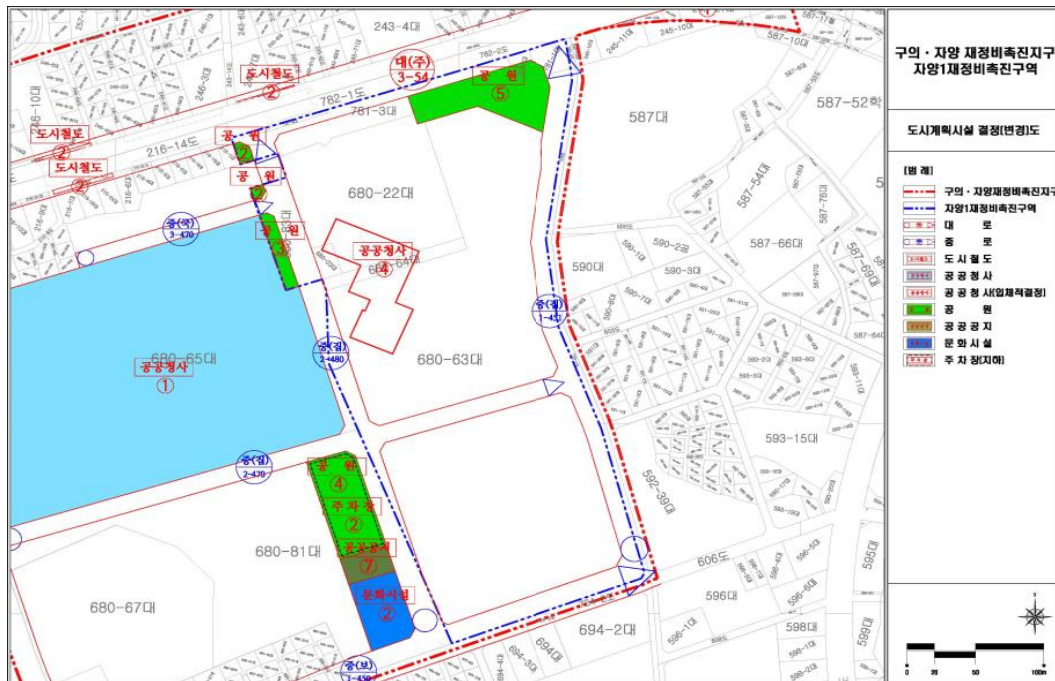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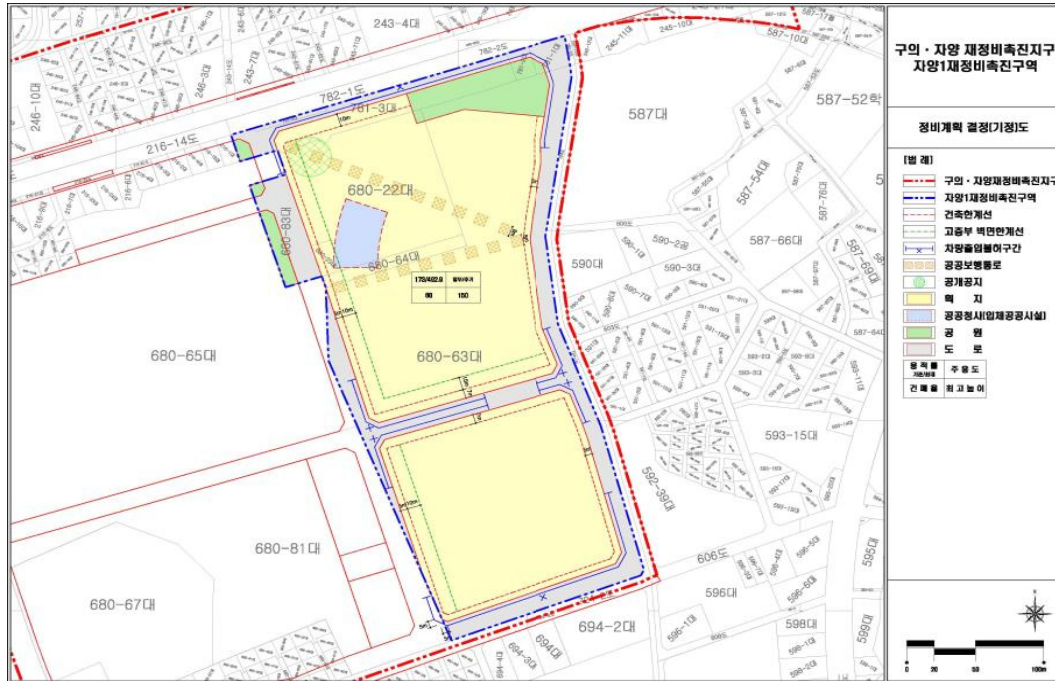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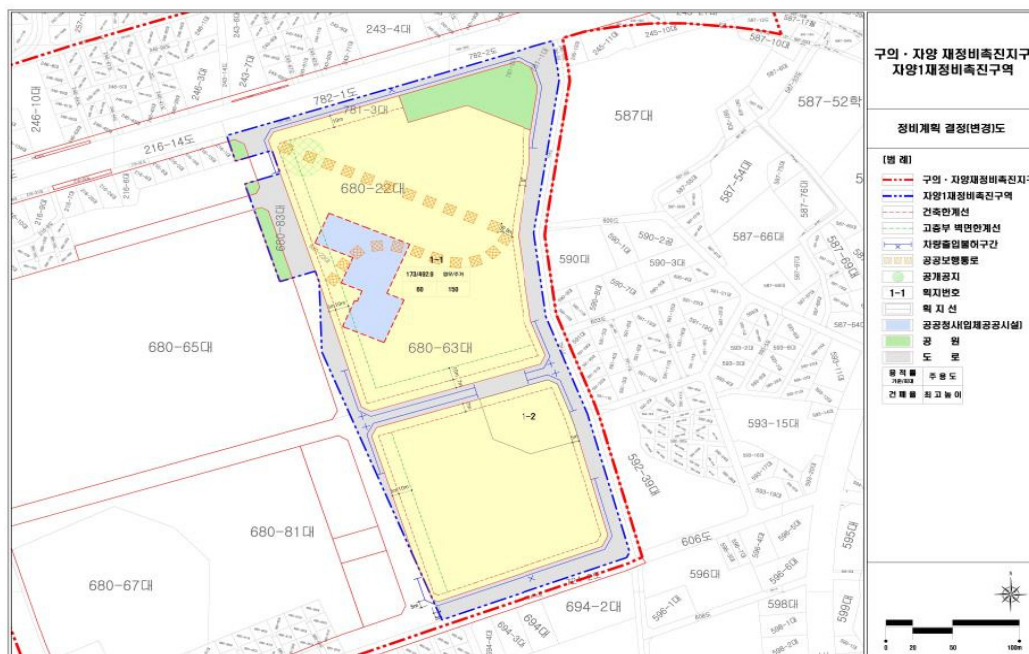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4호

사육신 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무부 고시 제324호(1956.05.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7-416호(2007.11.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사육신 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육신 역사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묘지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사육신 역사관을 설치하여 시민의 역사 교육 장소와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대

3. 면 적 : 47,832m²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4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육신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152-3번지 일대)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7,832.00	11,516.89	8	335.63	387.43	231	47,832.00	12,024.98	5	650.45	972.17	231	
기 반 시 설	소계	5,367.71	5,367.71					5,367.71	5,367.71					
	도로	4,242.97	4,242.97					4,242.97	4,242.97					
	광장	1,124.74	1,124.74					1,124.74	1,124.74					
조경시설		1,927.24	1,927.24		17.00	17.00	29	1,927.24	1,927.24		17.00	17.00	29	
휴양시설		200.94	200.94				108	200.94	200.94				108	
운동시설		9.20	9.20				8	9.20	9.20				8	
교양시설		—	—	—	—	—	—	677.29	677.29	1	490.92	812.64		증 677.29㎡
편익시설		564.00	564.00	2	84.80	136.60	2	514.00	514.00				2	감 50.11㎡
관리시설		147.10	147.10	2	91.30	91.30	83	27.90	27.90		—	—	83	감 119.20㎡
녹지및기타		39,615.81	3,300.70	4	142.53	142.53	1	39,107.72		4	142.53	142.53	1	감 508.09㎡
시 설 율 (제한없음)		(11,516.89㎡ / 47,832.00㎡) × 100 = 24.08%						(12,024.98㎡ / 47,832.00㎡) × 100 = 25.14%						
건 폐 율 (법정 20%)		(335.63㎡ / 47,832.00㎡) × 100 = 0.70%						(650.45㎡ / 47,832.00㎡) × 100 = 1.36%						

나. 시설 조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152-3일대	47,832.00	11,516.89		8	335.63	387.43	231		152-3일대	47,832.00	12,024.98		5	650.45	972.17	231	
기 반 시 설	소 계			5,367.71	5,367.71								5,367.71	5,367.71						
	도 로			4,242.97	4,242.97								4,242.97	4,242.97						
	광 장	가		1,124.74	1,124.74						가		1,124.74	1,124.74						
		가-1		(170.00)	(170.00)						가-1		(170.00)	(170.00)						
		가-2		(459.20)	(459.20)						가-2		(459.20)	(459.20)						
		가-3		(393.80)	(393.80)						가-3		(393.80)	(393.80)						
		가-4		(18.20)	(18.20)						가-4		(18.20)	(18.20)						
		가-5		(83.54)	(83.54)						가-5		(83.54)	(83.54)						
조 경 시 설	소 계			1,927.24	1,927.24			17.00	17.00	29			1,927.24	1,927.24			17.00	17.00	29	
	파고라A	①		48.98	48.98	목재				4	①		48.98	48.98	목재				4	
	파고라B	②		32.00	32.00	목재				2	②		32.00	32.00	목재				2	
	팔각정자	③		17.00	17.00	와즙		17.00	17.00	1	③		17.00	17.00	와즙		17.00	17.00	1	
	데크A	④		130.30	130.30	목재				1	④		130.30	130.30	목재				1	
	데크B	⑤		188.50	188.50	목재				1	⑤		188.50	188.50	목재				1	
	돌담	⑥		33.30	33.30	석재				10	⑥		33.30	33.30	석재				10	
	잔디스탠드	⑦		158.20	158.20						⑦		158.20	158.20						
	계단	⑧		26.30	26.30						⑧		26.30	26.30						
	앉음벽A	⑨		2.80	2.80					1	⑨		2.80	2.80					1	
	앉음벽B	⑩		1.60	1.60					1	⑩		1.60	1.60					1	
	앉음벽C	⑪		3.91	3.91					1	⑪		3.91	3.91					1	

구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 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 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자연석가벽	㉓		4.42	4.42					1	㉓		4.42	4.42					1	
	플랜터	㉔		2.51	2.51					1	㉔		2.51	2.51					1	
	화계A	㉕		22.87	22.87					1	㉕		22.87	22.87					1	
	화계B	㉖		9.16	9.16					1	㉖		9.16	9.16					1	
	화계C	㉗		16.13	16.13					1	㉗		16.13	16.13					1	
	수목보호휨덮개	㉘		2.26	2.26					2	㉘		2.26	2.26					2	
	화단	나		205.00	205.00						나		205.00	205.00						
	잔디광장	다		517.30	517.30						다		517.30	517.30						
	초화원	라		192.10	192.10						라		192.10	192.10						
	화계	마		312.60	312.60						마		312.60	312.60						
휴양 시설	소 계			200.94	200.94					108			200.94	200.94					108	
	벤치	㉙		29.16	29.16	목재				94	㉙		29.16	29.16	목재				94	
	평의자	㉚		(3.84)	(3.84)					6	㉚		(3.84)	(3.84)					6	
	등의자	㉛		1.92	1.92					3	㉛		1.92	1.92					3	
	단식의자	△		(0.98)	(0.98)					5	△		(0.98)	(0.98)					5	
	휴게소	바		169.86	169.86						바		169.86	169.86						
		바-1		(81.44)	(81.44)						바-1		(81.44)	(81.44)						
		바-2		(9.53)	(9.53)						바-2		(9.53)	(9.53)						
		바-3		(37.01)	(37.01)						바-3		(37.01)	(37.01)						
		바-4		(41.88)	(41.88)						바-4		(41.88)	(41.88)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유 보 시설	소 계			9.20	9.20					8			9.20	9.20						8	
	체어스탠딩	△		2.10	2.10					1	△		2.10	2.10					1		
	트리플트위스트	△		0.80	0.80					1	△		0.80	0.80					1		
	크로스스윙	△		0.80	0.80					1	△		0.80	0.80					1		
	바디실업	△		2.00	2.00					1	△		2.00	2.00					1		
	백스트레칭	△		0.90	0.90					1	△		0.90	0.90					1		
	스트레칭레그암	△		0.60	0.60					1	△		0.60	0.60					1		
	런닝머신	△		1.70	1.70					1	△		1.70	1.70					1		
	웨이트트위스트	△		0.30	0.30					1	△		0.30	0.30							
교양 시설	소 계											677.29	677.29		1	490.92	812.64		증 677.29㎡		
	사육신역사관									1		677.29	677.29		1	490.92	812.64		신설		
관 리 시 설	소 계			564.00	564.00		2	84.80	136.60	2			514.00	514.00					2	감 50.00㎡	
	화장실	1		50.00	50.00	외접	1	33.00	33.00											폐지	
	화장실	2		68.60	68.60	외접	1	51.80	103.60											폐지	
	공중전화	△		2.00	2.00					1	△		2.00	2.00					1		
	음수전	△		17.00	17.00					1	△		17.00	17.00					1		
	주차장	사		426.40	426.40						사		495.00	495.00						화장실(2) 부지면입	
	소 계			147.10	147.10		2	91.30	91.30	83			27.90	27.90					83	감 119.20㎡	
	관리사무소	3		103.00	103.00	외접	1	75.10	75.10											폐지	
	창고	4		16.20	16.20	외접	1	16.20	16.20											폐지	
	공원등	△				주철				55	△				주철				55		
	휴지통	△				스텐				12	△				스텐				12		
	안내판	△		7.40	7.40	스텐				1	△		7.40	7.40	스텐				1		
	목재웬스	△		20.50	20.50						△		20.50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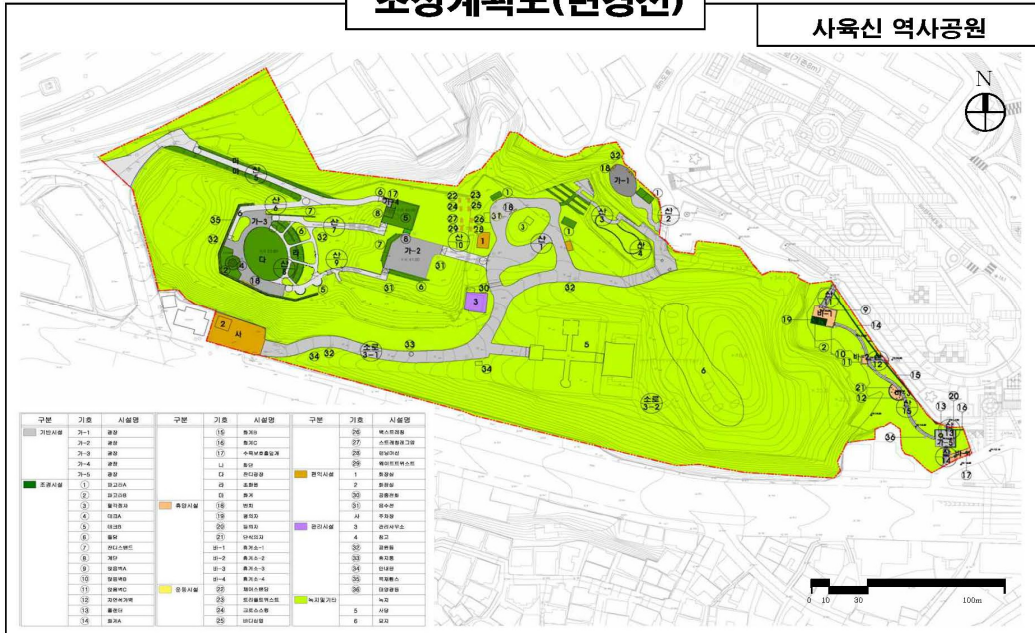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태양광등	ㄱ								15	ㄱ								15	
녹지 및 기타	소 계			39,615.81	3,300.70		4	142.53	142.53	1			39,107.72	3,300.70		4	142.53	142.53	1	녹지 감 508.09㎡
	기타(사당)	5		2,071.80	2,071.80	와즙	4	142.53	142.53	1	3		2,071.80	2,071.80	와즙	4	142.53	142.53	1	서울시지정 문화재 제8호
	기타(묘지)	6		1,228.90	1,228.90						4		1,228.90	1,228.90						
	녹 지	아		36,315.11								아		35,807.02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 초	합 계				1,120.40	4,242.97				
당 초	소 로	소 계			333.00	1,570.00				
당 초		3	1	6	226.00	1,356.00	진입로	정문	후문	
당 초		3	2	6	107.00	214.00	진입로	정문	후문	
당 초	산책로	소 계			787.40	2,672.97				
당 초			1	6.0	138.00	828.00	산책로	화장실입구	화장실입구	
당 초			2	3.0	27.00	80.00	산책로	휴게공간1입구	광장입구	
당 초			3	1.8	31.00	58.00	산책로	휴게공간2입구	화단앞	
당 초			4	3.7	83.00	314.00	산책로	휴게공간2입구	휴게공간3입구	
당 초			5	3~4	102.60	322.00	진입로	입구	광장 가-4	
당 초			6	2~4	56.70	164.20	연결로	산책로-5	광장 가-3	
당 초			7	3~4.5	62.80	197.50	산책로	광장 가-3	데크B	
당 초			8	1.2~1.5	76.40	174.30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3	
당 초			9	1.5~4.5	65.00	181.20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2	
당 초			10	5.0	23.80	123.00	연결로	산책로	광장 가-2	
당 초			11	3.0	14.60	42.65	산책로	입구	휴게소 바-1	
당 초			12	3.0	8.00	24.39	산책로	입구	산책로 12	
당 초			13	2.0	2.00	4.03	산책로	입구	광장 가-5	
당 초			14	3.0	10.20	30.23	산책로	입구	광장 가-5	
당 초			15	1.5	86.30	129.47	산책로	휴게소 바-1	광장 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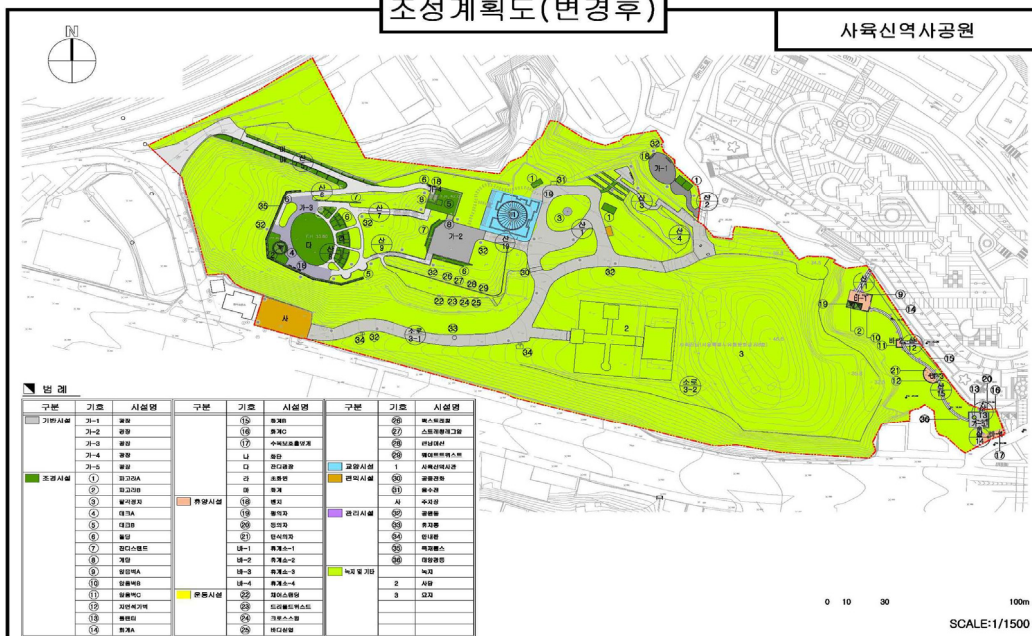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사육신 역사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사육신역사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5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1호(2016.09.0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0호(2016.11.10.)로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8번지 일대 “가칭)동북권 체육공원”에 대한 공식명칭이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결정되었기에 공원명칭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공원명칭 결정사항

연번	구분	위 치	면적 (㎡)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체육공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8번지 일대	49,830	다락원 체육공원	동북권 체육공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 02-2133-844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7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1940.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1호(2015.09.17.)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남산 회현자락 내 발굴된 조선시대 성곽 유구 등 한양도성 유적을 보존하고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
- 3.면 적 : 604,178㎡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9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3783-5966)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공작물 (기)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4,178.00	84,649.62	23.00	10,362.86	48,901.63	212	604,178.00	85,807.34	25	10,571.62	49,177.43	214																				
기 반 시 설	소	계	76,587.07	41,087.07				33.00	74,022.28	38,522.28				33	감) 2,564.79㎡																			
	도	로	66,801	31,301.00 (35,500.00)					66,067.68	30,567.68 (35,500.00)					감) 733.32㎡																			
	광	장	9,786.07	9,786.07				(33)	7,954.60	7,954.60				(33)	감) 1,831.47㎡																			
조 경 시 설			957.29	957.29				7	598.17	598.17				7	감) 359.12㎡																			
유 희 시 설			0	0				0	0	0				0																				
휴 양 시 설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교 양 시 설			11,565.89	9,894.40	7	5,422.78	29,113.39	3	15,351.85	13,680.36	9	5,702.78	29,392.39	3	증) 3,785.96㎡																			
운 동 시 설			2,882.33	2,882.33				24	2,882.33	2,882.33				24																				
편 익 시 설			23,378.82	23,378.82	14	4,756.66	19,328.52	40	23,674.49	23,674.49	14	4,685.42	19,325.32	42	증) 295.67㎡																			
관 리 시 설			586.31	586.31	1	119.25	395.55		586.31	586.31	1	119.25	395.55																					
녹지 및 기타			482,356.89						481,199.17						감) 1,157.72㎡																			
시 설 율 (법정 40%)			(84,649.62 / 604,178.00) × 100 = 14.01%						(85,807.34 / 604,178.00) × 100 = 14.20						증) 0.19%																			
건 폐 율 (법정 10%)			(10,362.86 / 604,178.00) × 100 = 1.72%						(10,571.62 / 604,178.00) × 100 = 1.75%						증) 0.03%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604,178.00	84,649.62		23	10,362.86	48,901.63	212			604,178.00	85,807.34		25	10,571.62	49,177.43	191	
기 반 시 설	소 계			76,587.07	41,087.07					33			74,022.28	38,522.28					33	(감 2,564.79㎡)
	도 로			66,801.00	31,301.00 (35,500.00)								66,067.68 (35,500.00)	30,567.68 (35,500.00)						(감 733.32㎡)
	광 장	가		9,786.07	9,786.07					33	가		7,954.60	7,954.60					33	(감 1,831.47㎡)
		가-1	중구 남창동 205-4	(607.93)	(607.93)					(2)	가-1	중구 남창동 205-4	(607.93)	(607.93)					(2)	
		가-2	⋈	(410.88)	(410.88)					(1)	가-2	⋈	(410.88)	(410.88)					(1)	
		가-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69.32)	(69.32)					(1)	가-3	중구 회현동1가 100-115	(69.32)	(69.32)					(1)	
		가-4	⋈	(3,210.68)	(3,210.68)						가-4	⋈	(3,210.68)	(3,210.68)						
		가-5	⋈	(296.17)	(296.17)					(1)	가-5	⋈	(296.17)	(296.17)					(1)	
		가-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607.04)	(607.04)					(11)	가-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365.67)	(365.67)					(11)	변경) (감 241.37㎡)
		가-7	⋈	(2,546.42)	(2,546.42)					(2)	가-7	⋈	(956.32)	(956.32)					(2)	변경) (감 1590.1㎡)
		가-8	중구 예장동 8-1	(435.98)	(435.98)					(3)	가-8	중구 예장동 8-1	(435.98)	(435.98)					(3)	
		가-9	중구 예장동 산5-6	(1,404.77)	(1,404.77)					(12)	가-9	중구 예장동 산5-6	(1,404.77)	(1,404.77)					(12)	
		가-10	용산구 후암동 30-80	(196.88)	(196.88)						가-10	용산구 후암동 30-80	(196.88)	(196.88)						
조 경 시 설	소 계			957.29	957.29					7			598.17	598.17					7	(감 359.12㎡)
미로 정원	타-1	중구 회현동1가 100-177	(359.12)	(359.12)																폐지) (감 359.1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안개 분수	타-2	중구 예장동 산5-6	(10.40)	(10.40)						타-2	중구 예장동 산5-6	(10.40)	(10.40)							
	실개천	타-3	〃	(536.92)	(536.92)					(7)	타-3	〃	(536.92)	(536.92)					(7)		
	연 못	타-4	〃	(50.85)	(50.85)						타-4	〃	(50.85)	(50.85)							
휴 양 시 설	소 계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휴게소	다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다		5,863.40	5,863.40		1	64.17	64.17	105		
		다-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3.59)	(53.59)						다-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3.59)	(53.59)							
		다-2	중구 회현동1가 산1-2	(41.02)	(41.02)						다-2	중구 회현동1가 산1-2	(41.02)	(41.02)							
		다-3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84)	(71.84)						다-3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84)	(71.84)							
		다-4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43)	(71.43)						다-4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1.43)	(71.43)							
		다-5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6.64)	(76.64)						다-5	중구 남대문로5가 467	(76.64)	(76.64)							
		다-6	용산구 후암동 30-80	(608.58)	(608.58)					(6)	다-6	용산구 후암동 30-80	(608.58)	(608.58)					(6)		
		다-7	용산구 후암동 산5-6	(1,056.43)	(1,056.43)					(7)	다-7	용산구 후암동 산5-6	(1,056.43)	(1,056.43)					(7)		
		다-8	중구 예장동 8-1	(171.96)	(171.96)					(1)	다-8	중구 예장동 8-1	(171.96)	(171.96)					(1)		
		다-9	중구 예장동 산5-6	(826.88)	(826.88)					(19)	다-9	중구 예장동 산5-6	(826.88)	(826.88)					(19)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다-10	중구 예장동 8-1	(945.70)	(945.70)	시멘트	(1)	(64.17)	(64.17)	(10)	다-10	중구 예장동 8-1	(945.70)	(945.70)	시멘트	(1)	(64.17)	(64.17)	(10)	
		다-11	중구 예장동 산5-6	(720.23)	(720.23)					(14)	다-11	중구 예장동 산5-6	(720.23)	(720.23)					(14)	
		다-12	중구 남산동2가 52-1	(218.91)	(218.91)					(6)	다-12	중구 남산동2가 52-1	(218.91)	(218.91)					(6)	
		다-13	중구 회현동1가 산1-2	(118.10)	(118.10)					(2)	다-13	중구 회현동1가 산1-2	(118.10)	(118.10)					(2)	
		다-14	중구 회현동1가 산1-16	(145.71)	(145.71)					(12)	다-14	중구 회현동1가 산1-16	(145.71)	(145.71)					(12)	
		다-15	중구 회현동1가 산1-2	(159.59)	(159.59)					(9)	다-15	중구 회현동1가 산1-2	(159.59)	(159.59)					(9)	
		다-16	중구 회현동1가 산1-16	(363.49)	(363.49)					(12)	다-16	중구 회현동1가 산1-16	(363.49)	(363.49)					(12)	
		다-17	중구 회현동1가 산1-2	(213.30)	(213.30)					(7)	다-17	중구 회현동1가 산1-2	(213.30)	(213.30)					(7)	
교양시설	소 계			11,565.89	9,894.4		7	5,422.78	29,113.39	3			15,351.85	13,680.36		9	5,702.78	29,392.39	3	(증 3,785.96)
	남산시립도서관	5	용산구 후암동 30-84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5	용산구 후암동 30-84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안중근기념관	6	중구 남대문로5가 471	2,347.24	1,185.02	R/C	1	1,185.02	3,756.61		6	중구 남대문로5가 471	2,347.24	1,185.02	R/C	1	1,185.02	3,756.61		
	서울과학교육원	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7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보호각										8	중구 회현 100-267	2,036.29	2,036.29	S/C	1	(1,787)	(1,440)		신설) *건축법시행령 119조1항3호 타목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 (증 2,036.29㎡)
	박물관 안내실										9	중구 회현 100-267	367.12	367.12	R/C	1	280	279		신설) (증 367.12㎡)
	봉수대	자	중구 예장동 산5-6	237.27	106.14						자	중구 예장동 산5-6	237.27	106.14						
	와룡묘	바	중구 예장동 산5-6	500.00	121.86	목조	4	121.86	121.86	3	바	중구 예장동 산5-6	500.00	121.86	목조	4	121.86	121.86	(3)	
	야 외 공연장	카	중구 회현동1가 100-177	847.14	847.14															폐지> (감 847.14㎡)
	동 상 기념비	하		2,304.91	2,304.91						하		4,540.54	4,540.54						(증 2,229.69㎡)
	김유신 장군상	하-1	중구 남창동 205-4	(340.00)	(340.00)						하-1	중구 남창동 205-4	(340.00)	(340.00)						
	김구상	하-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25.00)	(525.00)						하-2	중구 회현동1가 100-115	(525.00)	(525.00)						
	이시 영상	하-3	〃	(181.41)	(181.41)						하-3	〃	(181.41)	(181.41)						
	안중근 의사상	하-4	용산구 후암동 30-80	(16.00)	(16.00)						하-4	용산구 후암동 30-80	(191.41)	(191.41)						동상이전공사 (2010)후 도서반영 (증 175.41㎡)
	정약용상	하-5	용산구 후암동 30-84	(112.50)	(112.50)						하-5	용산구 후암동 30-84	(112.50)	(112.50)						
	이황상	하-6	〃	(180.00)	(180.00)						하-6	〃	(180.00)	(180.0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지훈 시 비	하-7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하-7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반공청년 기념비	하-8	"	(850.00)	(850.00)						하-8	"	(850.00)	(850.00)						
	안중근의 사유목석 비	하-9		(5.94)	(5.94)						하-9		(64.35)	(64.35)						누락석비 현황에 맞게 조정 (증 58.41㎡)
	조선신궁 기단1										하-10		(11.15)	(11.15)						신설> (증 11.15㎡)
	조선신궁 기단2										하-11		(18.93)	(18.93)						신설> (증 18.93㎡)
	분수대 유적										하-12		(283.05)	(283.05)						신설> (증 283.05㎡)
	조선신궁 배전터										하-13		(328.95)	(328.95)						신설> (증 328.95㎡)
	성곽흔적 1										하-14		(376.06)	(376.06)						신설> (증 376.06㎡)
	성곽흔적 2										하-15		(109.78)	(109.78)						신설> (증 109.78㎡)
	조선신궁 배수로 유적										하16		(31.05)	(31.05)						신설> (증 31.05㎡)
	경사지 한양도성										하17		(836.9)	(836.9)						신설> (증 836.9㎡)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면적	소 계			2,882.33	2,`882.33					24			2,882.33	2,882.33					24		
	배 드 민턴장	라		490.44	490.44						라		490.44	490.44							
		라-1	중구 예장동 산5-6	(163.48)	(163.48)						라-1	중구 예장동 산5-6	(163.48)	(163.48)							
		라-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326.96)	(326.96)						라-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3	(326.96)	(326.96)							
	체 력 단련장	마		2,391.89	2,391.89					24	마		2,391.89	2,391.89					24		
		마-1	중구 예장동 산5-6	(1,439.00)	(1,439.00)					(12)	마-1	중구 예장동 산5-6	(1,439.00)	(1,439.00)					(12)		
		마-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759.64)	(759.64)					(3)	마-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759.64)	(759.64)					(3)		
		마-3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3.25)	(193.25)					(9)	마-3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3.25)	(193.25)					(9)		
	편 의 시설	소 계			23,378.82	23,378.82		14	4,756.66	19,328.52	40			23,674.49	23,674.49		14	4,685.42	19,325.32	42	(증 295.67㎡)
		주차장	나		8,228.28	8,228.28					14	나		8,459.26	8,459.26					14	(증 230.98㎡)
나-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57.60)	(457.60)						나-1	중구 회현동1가 100-115	(457.60)	(457.60)							
나-2			중구 회현동1가 100-177	(1,299.77)	(1,299.77)					(9)	나-2	중구 회현동1가 100-177	(2,046.11)	(2,046.11)					(9)	변경> 회현자락정비 사업 3단계추진 반영 (증 746.3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주차장	나-3	용산구 후암동 30-84	(4,956.94)	(4,956.94)						나-3	용산구 후암동 30-84	(4,956.94)	(4,956.94)						
		나-4	＃	(515.36)	(515.36)														폐지> (감 515.36㎡)	
		나-5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998.61)	(998.61)					(5)	나-5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998.61)	(998.61)					(5)	
	화장실	2		349.77	349.77		4	325.98	363.94		2		414.46	414.46		4	254.74	360.74	2	(증 64.69㎡)
		2-1	중구 회현동1가 산1-2	(71.24)	(71.24)	R/C	(2)	(71.24)	(109.20)		2-1	중구 회현동1가 산1-2								<폐지> (감 71.24㎡)
		2-2	중구 예정동 산5-6	(135.00)	(135.00)	R/C	(1)	(135.00)	(135.00)		2-2	중구 예정동 산5-6	(135.00)	(135.00)	R/C	(1)	(135.00)	(135.00)		
		2-3	용산구 후암동 30-84	(86.36)	(86.36)	R/C	(1)	(62.57)	(62.57)		2-3	용산구 후암동 30-84	(86.36)	(86.36)	R/C	(1)	(62.57)	(62.57)		
		2-4	용산구 후암동 산1-2	(57.17)	(57.17)	R/C	(1)	(57.17)	(57.17)		2-4	용산구 후암동 산1-2	(57.17)	(57.17)	R/C	(1)	(57.17)	(57.17)		
											2-5	중구 회현동1가 산 1-2	(135.93)	(135.93)	R/C	(1)	(0)	(106)	(2)	<화장실 및 공작물 2기 신설> 1)담장: 높이2.6m, 길이7.8m 2)옹벽: 높이4.25m, 길이15 m (증 135.93㎡)
	서울 타워	3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2	3,049.81	15,187.96	20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0,898.60	10,898.60	R/C	2	3,049.81	15,187.96	20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3-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				3-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				
		3-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				3-2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1)				
	매 점	4		446.93	446.93		3	284.18	470.98		4		446.93	446.93		3	284.18	470.98		
		4-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310.85)	(310.85)	R/C	(1)	(148.10)	(262.81)		4-1	용산구 용산동2가 산1-1	(310.85)	(310.85)	R/C	(1)	(148.10)	(262.81)		
		4-2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136.08)	(136.08)	목구조, R/C	(2)	(136.08)	(208.17)		4-2	용산구 회현동1가 산1-1	(136.08)	(136.08)	목구조 ,R/C	(2)	(136.08)	(208.17)		
	삭 도	사	중구 회현동1가 산1-19	1,321.30	1,321.30		2	656.79	2,272.25		사	중구 회현동1가 산1-19	1,321.30	1,321.30		2	656.79	2,272.25		
	삭도하단 승강장			(561.25)	(561.25)	R/C	(1)	(455.16)	(1,859.92)				(561.25)	(561.25)	R/C	(1)	(455.16)	(1,859.92)		
	삭 도 주차장			(760.05)	(760.05)								(760.05)	(760.05)						
	기념품 판매장					R/C	(1)	(201.63)	(412.33)						R/C	(1)	(201.63)	(412.33)		
	한국삭도 (중점)	아	중구 예장동 산5-6	1,539.40	1,539.40		3	439.90	1,033.39		아	중구 예장동 산5-6	1,539.40	1,539.40		3	439.90	1,033.39		
		아-1	중구 예장동 산5-6			R/C	(1)	(391.74)	(986.85)		아-1	중구 예장동 산5-6			R/C	(1)	(391.74)	(986.85)		
		아-2	중구 예장동 산5-6			목구조	(1)	(10.70)	(10.70)		아-2	중구 예장동 산5-6			목구조	(1)	(10.70)	(10.70)		
		아-3	중구 예장동 산5-6			철골 구조	(1)	(37.46)	(35.84)		아-3	중구 예장동 산5-6			철골 구조	(1)	(37.46)	(35.84)		
	경사형 엘리베 이터	차	중구 회현동1가 산1-32	117.13	117.13						차	중구 회현동1가 산1-32	117.13	1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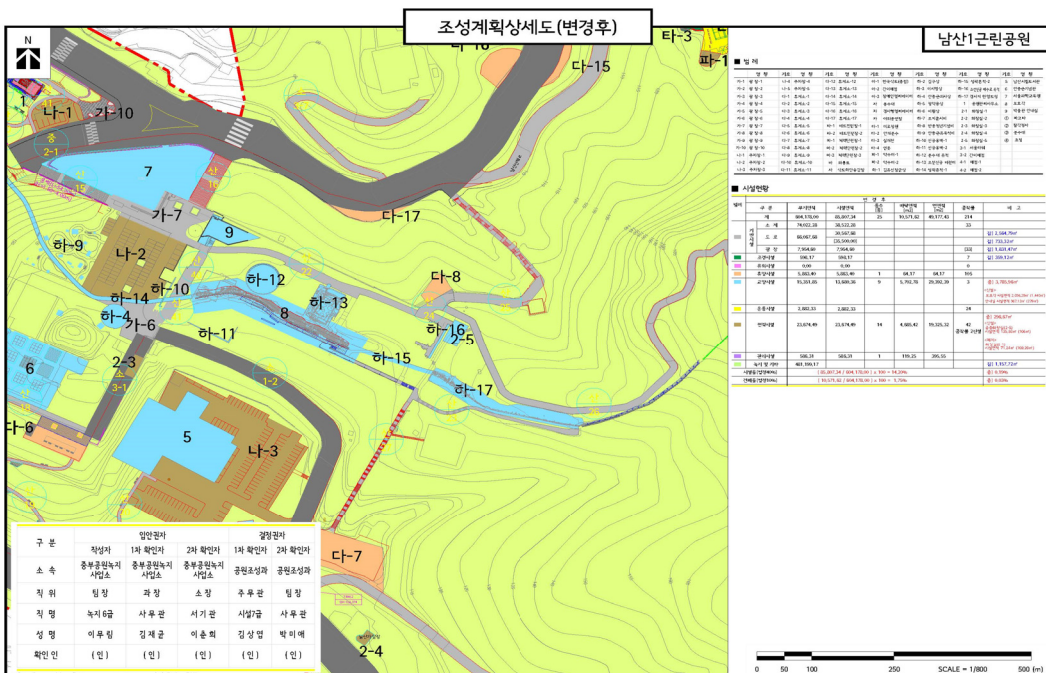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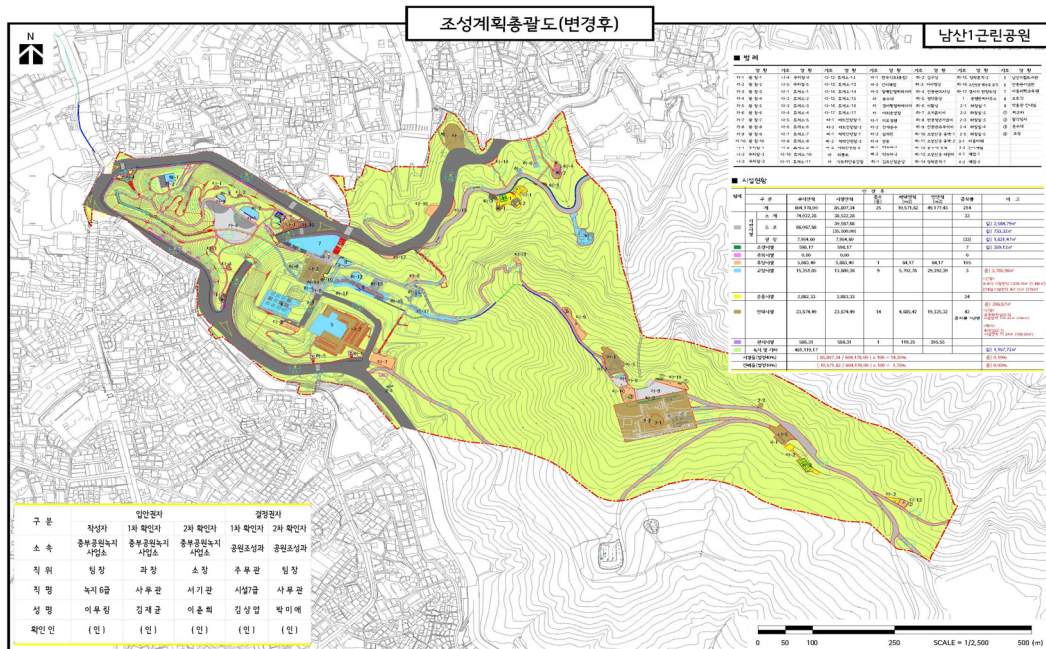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약수터	파	중구 예장동 산5-6	477.41	477.41					6	파	중구 예장동 산5-6	477.41	477.41					6	
		파-1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파-1	중구 예장동 산5-6	(100.00)	(100.00)						
		파-2	중구 예장동 산5-6	(377.41)	(377.41)					(6)	파-2	중구 예장동 산5-6	(377.41)	(377.41)					(6)	
관리시설	소 계			586.31	586.31		1	119.25	395.55				586.31	586.31		1	119.25	395.55		
	관 리 사무소	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86.31	586.31		1	119.25	395.55		1	중구 회현동1가 산1-2	586.31	586.31		1	119.25	395.55		
	남 산 가압장																			
녹지 및 기타	소 계			482,356.89									481,119.96							(감 1,157.72㎡)
	녹 지			482,356.89									481,119.96							(감 1,157.7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소계			8,852.00	31,301.00				
변경		소계			8,494.00	30,567.68				(감733.32㎡)
당초	중로	계			2,075.00	4,500.00				
당초		1	1	20	895.0	(17,900.00)	도시계획 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1	2	20	880.0	(17,600.00)	도시계획 도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	1	15	300.0	4,50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물에 미포함.								
당초	소로	계			2,215.00	13,440.50				
당초		1	2	10	267.00	2,670.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3	
변경		1	2	10	205.50	2,005.50	부진입로	중로 1-1	광장6	(감 664.5㎡)
당초		3	1	10	65.00	650.00	산책로	소로1-2	산책로37	
변경		3	1	10	72.5	725.00	산책로	광장6	산책로18	(증 75.0㎡)
당초		3	9	6	281.00	1,686.00	부진입로	중로 1-1	공원경계	
당초		3	2	6	336.00	2,016.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주차장5	
당초		3	3	6	535.00	3,210.00	부진입로	공원경계	남산타워	
당초		3	4	4	82.00	328.00	산책로	소로 3-2	남산타워	
당초		3	5	4	45.00	180.00	산책로	소로 3-3	남산타워	
당초		3	6	5	479.00	2,395.00	부진입로	공원경계	중로 1-2	
당초		3	7	5	164.00	820.00	산책로	중로 1-2	남산3호터널	
당초		3	8	5	15.00	75.00	산책로	중로 1-1	공원경계	
당초		등산로	계			1,411.00	4,587.93			
당초	-		25	3	130.00	390.00	등산로	중로 1-2	화장실1	
당초	-		26	4	637.00	2,548.00	등산로	화장실1	광장8	
변경	-		26	4	637.00	2,808.43	등산로	산책로24	광장8	선형 변경 (증 260.43㎡)
당초	-		27	2	157.00	314.00	등산로	휴게소7	산책로28	
변경	-		27	2	116.00	232.00	등산로	휴게소7	산책로23	선형 변경 (감 82㎡)
당초	-		28	3	56.00	168.00	등산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29	3	159.00	477.00	등산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초	-		30	1.5	13.00	19.50	등산로	산책로33	산책로32	
당초	-		31	1.5	66.00	99.00	등산로	휴게소14	소로 3-6	
당초	-		32	3	56.00	168.00	등산로	공원경계	반공청년기념비	
당초	-		33	2	79.00	158.00	등산로	공원경계	약수터2	
당초	-		34	2	34.00	68.00	등산로	산책로33	소로 3-6	
당초	산책로	계			2,793.00	8,039.25				
당초		-	1	3.6	523.00	1,883.00	산책로	광장1	광장10	
당초		-	2	2	200.00	400.0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9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	3	2.3	309.00	711.00	산책로	중로 1-1	산책로2	
당초		-	4	2	46.00	92.0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당초		-	5	2	16.00	32.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6	
당초		-	6	2	77.00	154.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8	
당초		-	7	2.5	8.00	20.00	산책로	광장2	산책로6	
당초		-	8	3	82.00	246.00	산책로	중로1-2	산책로6	
당초		-	9	3	48.00	144.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6	
당초		-	10	1.5	214.00	321.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당초		-	11	4	11.00	44.00	산책로	중로1-2	산책로8	
당초		-	12	2	122.00	244.00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	
당초		-	13	4	64.00	256.0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4	
당초		-	14	2	65.00	130.00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	
당초		-	15	6	49.00	294.00	산책로	중로 2-1	산책로43	
당초		-	16	5	34.00	170.00	산책로	중로 1-2	산책로44	
당초		-	17	2	78.00	156.00	산책로	산책로2	광장3	
폐지			17							(감 156㎡)
당초		-	18	4	85.00	340.00	산책로	소로 3-1	안중근기념관	
변경			18	4	93.5	374.00	산책로	소로 3-1	안중근기념관	(증 34㎡)
당초		-	19	2	162.00	324.00	산책로	산책로22	휴게소6	
당초		-	20	2	53.00	106.00	산책로	정양용상	주차장1	
당초		-	21	3	10.00	30.00	산책로	광장7	산책로2	
폐지			21							(감 30㎡)
당초		-	22	3	200.00	600.00	산책로	광장7	화장실1	
변경			22	4	150	600.00	산책로	광장7	화장실5	폭원변경 3m→4m
당초	산책로	-	23	1.5	85.00	127.50	산책로	산책로2	화장실1	
변경		-	23	2.5	136.5	341.25	산책로	산책로27	경사지 한양도성	선형변경 (증 213.75㎡)
당초		-	24	2	23.00	46.00	산책로	산책로25	화장실1	
변경		-	24	4.5	70	315	산책로	산책로25	화장실5	선형변경 (증 269㎡)
당초		-	35	2	44.00	88.00	산책로	산책로37	산책로3	
당초		-	36	2	6.00	12.00	산책로	산책로37	휴게소4	
당초		-	37	2	130.00	260.00	산책로	산책로3	휴게소5	
당초		-	38	3	12.00	36.0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9	
당초		-	39	3	365.00	1,095.00	산책로	산책로2	성곽흔적-1	
폐지		-	39							(감 1,095㎡)
신설			40	6.5	37	240.5	산책로	안내실	성곽흔적-1	(증 240.5㎡)
신설			41	6.5	31	201.5	산책로	성곽흔적-1	광장6	(증 201.5㎡)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69호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 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감리업 (서울S-2-531)	㈜중앙이엔에스 (11.01.11-42.75.031)	박 형 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6길 16, 상가 B3호(봉천동, 대영아파트)	2018.05.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8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2873	2018.4.5.	주식회사 성광이앤씨 이승만 110111-6486545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32, 206호 (능동, 노블레스빌)
2	202874	2018.4.5.	주식회사 케파스 주성돈 110111-4241743	서울 강남구 선릉로72길 42, 301호 (대치동)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3	202875	2018.4.11.	주식회사 한성컴퓨터 한동열 110111-2707276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73, 1층, 2층 (가산동)
4	202876	2018.4.11.	주식회사 알에프아이씨티 정경욱 110111-6547727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14층 (상암동, 디지털큐브)
5	202877	2018.4.12.	주식회사 한성기술개발 서창식 110111-1597454	서울 강북구 노해로 69-1, 4층 (수유동, 태현빌딩)
6	202878	2018.4.12.	뱅크웨어글로벌 주식회사 이경조 110111-5141877	서울 중구 통일로 86, 312호 (순화동, 바비엔빌딩3차)
7	202879	2018.4.18.	주식회사 에이비씨솔루션 이태형 130111-005117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8층 (여의도동, 신태진빌딩)
8	202880	2018.4.18.	다린전력 주식회사 오승한 110111-2417304	서울 관악구 봉천로 455 (봉천동, 태영빌딩5층)
9	202881	2018.4.18.	에스트랜스포트 주식회사 조광진 110111-6180634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에이1421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10	202882	2018.4.23.	큐보스 주식회사 오훈연 110111-5113610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27-8, 5층 (신사동)
11	202883	2018.4.23.	주식회사 천도건축사사무소 이용배 110111-3282409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0, 4층 (도곡동, 서원빌딩)
12	202884	2018.4.25.	주식회사 아이랜스테크놀로지 노재성 110111-3995177	서울 서초구 효령로36길 4, 303호 (방배동, 약공빌딩)
13	202885	2018.4.25.	버리테크 강승호 116-08-80095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704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189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비고
1	311053	2018.4.4.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박근태 110111-0006167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법인 합병
2	112588	2018.4.6.	주식회사 주광전기 이승훈 110111-2122169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1104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법인 합병
3	111177	2018.4.20.	주식회사 조인에프에스 박용민 110111-409721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97, 10동 332호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분할 합병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 - 289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10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정택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풍덕골길	일시 : 2018-03-03 15:25 장소 : 용마산로 내용 : 서울06차6533(덤프)차량 축하중 1.1톤 초과	처분일 : 2018. 4. 25. 과태료 : 50만원
조재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굴다리길	일시 : 2018-03-09 19:39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경기99사1335(트레일러)차량 폭 0.52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4. 25. 과태료 : 100만원
정만영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77번길	일시 : 2018-03-18 21:08 장소 : 강변북로 내용 : 90로2802(카고)차량 폭 0.29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4. 25. 과태료 : 30만원
신동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일시 : 2018-03-28 01:55 장소 : 천호대로 내용 : 경기98사7244(트레일러)차량 폭 0.29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4. 25. 과태료 : 30만원
박재희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일시 : 2018-03-28 02:37 장소 : 천호대로 내용 : 대전99바5010(트레일러)차량 폭 0.29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4. 25. 과태료 : 30만원
노진섭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길	일시 : 2018-03-31 05:25 장소 : 천호대로 내용 : 충남99사7232(트레일러)차량 폭 0.28미터 초과	처분일 : 2018. 4. 25.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8. 6.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11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이의제기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다. 이의 제기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이의제기 클릭 · 작성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1차과태료 공시송달 의뢰(2018.1.1.-1.15)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1호	2018-01-02	8:24:00	64조6390	박정호	10,000	경기도 평택시 목천로25번길 50-7, 105호(신장동)
2	남산1호	2018-01-02	11:32:11	22소5352	이정민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월문천로 95, 105동 1402호(덕소아이파크)
3	남산1호	2018-01-02	12:07:33	66보2220	한만석	10,000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6길 110, 143동 102호(전하동, 일산5단지아파트)
4	남산1호	2018-01-02	15:13:37	51라5312	MANTHIRIYAPPAN SURESHKUMAR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27, 1504동 702호(동백동, 호수마을어울림아파트)
5	남산1호	2018-01-02	15:26:29	36노9782	고도희	10,00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6-24, 205동 803호(덕계동, 덕계범양마더빌아파트)
6	남산1호	2018-01-02	18:34:32	66무3361	박광희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13, 1502동 2002호(평내동, 평내마을대주파크빌)
7	남산1호	2018-01-02	18:53:24	53두9930	홍숙희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48동 1003호(잠실동, 리센츠)
8	남산3호	2018-01-02	19:18:06	07나3090	김지연	1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08, A동 1501호(노형동, 예코트윈)
9	남산1호	2018-01-03	9:43:10	13덕0319	이재형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레로 2, 113동 502호(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
10	남산1호	2018-01-03	10:29:19	39부9856	(주)앤팍	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405호(고잔동, 장은타워)
11	남산3호	2018-01-03	11:02:08	01너1115	신광필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 30동 509호(반포동, 반포아파트)
12	남산3호	2018-01-03	11:16:26	55너5899	(주)유아세이프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 11층(삼성동, 인화빌딩)
13	남산1호	2018-01-03	11:28:11	38거1357	이승연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5동 601호(삼성동, 롯데캐슬프리미어)
14	남산1호	2018-01-03	14:34:50	30라7022	이동희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8나길 24(북가좌동)
15	남산3호	2018-01-03	14:36:19	61우5303	장극채	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51, 113동 702호(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16	남산1호	2018-01-03	18:43:58	65마3212	(주)선봉	10,000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국가안정공단 8-1-1블럭
17	남산3호	2018-01-03	19:22:19	59오1259	임재영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37, 10동 802호(반포동, 경남아파트)
18	남산3호	2018-01-03	19:46:32	11부2167	이정하	1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3, 207동 303호(관양동, 공작아파트)
19	남산1호	2018-01-04	10:14:01	01도9947	노용태	1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187번길 10(율전동)
20	남산3호	2018-01-04	14:43:43	50소8115	이계숙	5,0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149
21	남산3호	2018-01-04	16:06:33	서울55가6876	조삼숙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4길 6-6, 201호(응암동)
22	남산1호	2018-01-04	16:14:37	서울55년1941	박성은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7, 2/1 디오빌역삼 1612호(역삼동)
23	남산1호	2018-01-04	17:15:01	51누0905	채지연	10,000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50, 308동 1402호(병점동, 송화마을 우남퍼스트빌 3차)
24	남산3호	2018-01-04	17:36:32	68러6749	서승희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 502호(방배동, 멤버스뷰)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5	남산1호	2018-01-04	18:13:52	11모1502	김옥자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110(봉천동)
26	남산3호	2018-01-04	19:14:33	47고0598	GU JIALIN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6길 9-20, 301호 (창전동, 안다미로빌)
27	남산1호	2018-01-04	20:09:45	24너6966	신이자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14-26, B동 105호 (다산동, 원일빌라)
28	남산1호	2018-01-04	20:11:45	26거3316	김은하	1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725, 1207동 2004호(원신흥동, 어울림하트)
29	남산3호	2018-01-04	20:25:35	27두7460	조옥자	10,000	인천광역시 중구 백년로 32-3(운서동)
30	남산3호	2018-01-05	7:54:17	34우4789	정의태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0길 15-13, 502호 (방배동, 갤러리하우스)
31	남산1호	2018-01-05	7:54:53	26다6413	박준형	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자길 65, 지층102호(화곡동)
32	남산3호	2018-01-05	9:37:54	55부0291	김정태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2동 402호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33	남산3호	2018-01-05	11:11:43	11도4736	(주)한국화신국제 여행사	10,000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62, 1630호 (산본동, 인베스텔)
34	남산1호	2018-01-05	12:24:59	50수0658	김가람	10,00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북문길 39, 104호 (정아2차아파트)
35	남산1호	2018-01-05	12:54:46	04거6214	김현묵	1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11길 8(중곡동)
36	남산1호	2018-01-05	15:09:39	53보0164	김미경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11, 402호 (한남동)
37	남산3호	2018-01-05	16:05:29	02우5097	이정연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28, 가동 101호 (봉천동, 현대아트빌라)
38	남산3호	2018-01-05	16:51:30	02우5097	이정연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28, 가동 101호 (봉천동, 현대아트빌라)
39	남산1호	2018-01-05	18:15:25	19서9394	윤여득	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31-3, 305호 (영등포동)
40	남산1호	2018-01-05	18:22:54	33로9096	강종태	10,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동대로 2651, 201동 1202호(태평아파트)
41	남산3호	2018-01-05	18:45:29	02가8625	김은경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54, 1504호 (잠원동, 신화아파트)
42	남산3호	2018-01-05	19:34:50	29저2594	정오용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41번길 41-9 (정발산동)
43	남산1호	2018-01-05	19:47:09	41너8172	정시욱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38, 102동 3108호 (하동, 광고 더샵 레이크파크)
44	남산3호	2018-01-05	20:18:59	45서0687	원오이엔지 주식회사	1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09(성곡동)
45	남산1호	2018-01-05	20:41:18	52나4204	이규철	10,000	경기도 과천시 용마2로 8(과천동)
46	남산3호	2018-01-05	20:41:40	52루0141	안승범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5, 204동 801호(마두동, 백마마을)
47	남산1호	2018-01-05	20:44:29	39루8999	정선희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147-34, 103동 203호(강동빌라)
48	남산1호	2018-01-05	20:46:49	68오1695	유진상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B동 2704호(정자동, 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49	남산1호	2018-01-05	20:55:30	35가2202	(주) 신성엔지니어링	10,000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16(주암동)
50	남산1호	2018-01-08	7:24:13	15라0910	두기진	10,000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안로 185, 6313동 702호 (학암동, 현대엠코타운폴리체)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1	남산1호	2018-01-08	7:44:09	06오2558	강말옥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24길 44, 301호 (홍제동)
52	남산1호	2018-01-08	7:52:20	32보4862	이관성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29번길 13, 401호(매탄동)
53	남산1호	2018-01-08	10:56:12	67도4414	임은영	1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2길 13, 103동 1307호(창동, 신창아파트)
54	남산1호	2018-01-08	10:57:29	46보1496	전종화	5,00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32, 802호(코스미아파트)
55	남산1호	2018-01-08	11:19:17	43다0946	김민주	1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 5동 307호(시흥동, 중앙시흥하이츠빌라)
56	남산3호	2018-01-08	13:17:22	26머7686	HAN SHENGGUO	10,000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55, 302호 (귀동)
57	남산1호	2018-01-08	14:20:54	18여6120	김덕용	10,000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55, 703동 1005호 (옥길동, 엘에이치센트리뷰)
58	남산3호	2018-01-08	14:26:43	35누6715	이광현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폴3길 6-3(서초동)
59	남산1호	2018-01-08	15:24:19	09수1953	김명수	10,00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1길 6-4
60	남산3호	2018-01-08	15:52:50	60소6302	백성철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6, 210동 401호(마두동, 강촌마을)
61	남산1호	2018-01-08	17:28:47	50수4903	손지웅	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4길 28, 904호(등촌동, 아이디움)
62	남산1호	2018-01-08	20:00:54	23버2105	나형수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6-1, A동 202호(녹번동)
63	남산3호	2018-01-08	20:43:23	41가5521	AN YONGQUAN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24가길 40, 110호(신림동)
64	남산1호	2018-01-09	7:42:43	01조3152	정현수	10,000	경기도 파주시 금정23길 6, 202호(금촌동)
65	남산1호	2018-01-09	7:43:02	11마7044	(주)센스락	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52, 2층 (장안동, 세현빌딩)
66	남산1호	2018-01-09	8:01:28	31라2042	이재덕	10,000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58번길 19, 607호 (서정동)
67	남산3호	2018-01-09	9:15:35	35라8561	노시천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86, 108동 104호(이태원동, 이태원주공아파트)
68	남산1호	2018-01-09	11:14:18	22저1167	염성순	10,00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로 45, 4-1호 (백운빌라)
69	남산1호	2018-01-09	12:59:29	38무5896	삼원산업(주)	10,000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53번길 9-37(대연동)
70	남산3호	2018-01-09	14:01:45	10두4952	주-아이.피.에스 시스템	10,000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3로 4-8(과천동)
71	남산3호	2018-01-09	15:28:10	48거8182	임은제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810호 (내수동, 경희공의아침3단지아파트)
72	남산3호	2018-01-09	16:13:06	29러8821	곽미수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21길 17-2, 302호 (장위동, 고려빌라)
73	남산3호	2018-01-09	16:22:52	48러0657	최민형	10,000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346, 1205호 (문학동, 국일아파트)
74	남산1호	2018-01-09	17:08:40	19두9835	박승일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6길 16, 101동 102호(한남동, 리버탑아파트)
75	남산1호	2018-01-09	19:17:44	14다3582	김민욱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74, 502동 1602호 (길음동, 길음뉴타운)
76	남산3호	2018-01-10	7:31:04	52수0514	강준호	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번길 59-6, 101호 (방학동, 서진빌라)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7	남산3호	2018-01-10	8:09:55	30오2540	모가산업(주)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125번길 31
78	남산1호	2018-01-10	11:07:10	41루5276	최주혁	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96, 105동 1106호(상계동, 벽산아파트)
79	남산3호	2018-01-10	12:53:56	57도2803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66, 2층 (반포동, 선호빌딩)
80	남산1호	2018-01-10	16:30:08	55노9918	윤지서	10,000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1195번길 106-10, 402호(장록동)
81	남산3호	2018-01-10	16:34:30	28머7950	YIN LONGZHE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33길 17, 301호 (구로동)
82	남산3호	2018-01-10	19:08:09	31두2346	강수정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47-5(성북동)
83	남산1호	2018-01-10	19:41:24	24수9565	유동욱	5,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25, 105동 1404호 (상현동, 만현마을1단지롯데캐슬아파트)
84	남산1호	2018-01-10	19:53:29	43조4899	길지윤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908호 (역삼동, sk허브블루)
85	남산1호	2018-01-10	20:02:08	37버5684	홍승복	5,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83번길 15-13 (상대원동)
86	남산1호	2018-01-10	20:08:18	60노0779	(주)파인플레이스	10,00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102번길 20, 4층(범일동)
87	남산1호	2018-01-10	20:26:58	24너6966	신이자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14-26, B동 105호 (다산동, 원일빌라)
88	남산3호	2018-01-10	20:46:22	23다2018	주식회사 스옥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비동 604-3호(삼평동, 판교이노벨리)
89	남산1호	2018-01-11	7:01:05	47두8575	남택중	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2길 29-19, 402호 (화곡동)
90	남산1호	2018-01-11	7:09:44	64구4045	강혜진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99, 202동 1002호 (교남동, 경희공자이)
91	남산1호	2018-01-11	7:18:48	12구4909	(주)디앤에이치타워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37(구로동)
92	남산3호	2018-01-11	9:12:43	36라5810	이봉철	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7가길 19 (금호동4가)
93	남산1호	2018-01-11	9:52:59	33다4541	오의식	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라16길 3-15(공납동)
94	남산1호	2018-01-11	10:37:36	53머0970	안경숙	10,000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89, 205동 704호(오산동, 주공아파트)
95	남산1호	2018-01-11	11:39:06	26버4136	김태선	1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25번길 1 (상대원동)
96	남산3호	2018-01-11	12:48:42	경기40머9579	곽영은	10,000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615, 109동 1101호 (세교동, 잔다리아마을 1단지아파트)
97	남산1호	2018-01-11	12:51:54	20마7104	김양호 (더케이모터스) 상품용	10,000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49, A116호 (가좌동, 엠파크랜드)
98	남산1호	2018-01-11	15:30:10	56머5171	정정화	5,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12번길 124, 101동 401호(비래동, 진흥빌라)
99	남산1호	2018-01-11	15:43:08	57로8582	김여진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831, 201동 2005호(정릉동, 정릉힐스테이트1차아파트)
100	남산3호	2018-01-11	15:48:05	69수7837	권기웅	1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61-7, 206동 602호(우방아이유셀 2단지)
101	남산1호	2018-01-11	16:26:26	43라0333	양효정	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85, 518호(장안동, 장안현대벤처빌)
102	남산1호	2018-01-11	17:22:16	03노5254	김세진	1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5길 47, 403호(면목동, 파인빌라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03	남산1호	2018-01-11	18:52:48	58머9608	김현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103동 1008호(송남동, 씨티극동아파트)
104	남산3호	2018-01-11	19:08:58	35우5202	최지영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8길 51, 502호(구로동)
105	남산1호	2018-01-11	19:51:34	38버6379	전우철	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89, 102동 707호(월계동, 청백아파트)
106	남산3호	2018-01-11	20:04:40	27여5907	이영훈	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61길 20, 402호(사당동)
107	남산1호	2018-01-11	20:58:04	42조4957	신용화	1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11, 4507동 2203호(상현동, 광교마을 45단지)
108	남산1호	2018-01-12	10:03:50	39부9856	(주)앤팍	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405호(고잔동, 장은타워)
109	남산1호	2018-01-12	10:42:37	52누0673	최윤모	1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51, 202동 1803호(인계동, 동양파라곤)
110	남산1호	2018-01-12	12:13:51	42고3963	박태우	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2길 4, 202호(봉천동, 한양빌라)
111	남산1호	2018-01-12	14:02:29	23우7109	정난영	10,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식곡길32번길 29-5
112	남산3호	2018-01-12	14:08:07	02우5097	이정연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28, 가동 101호(봉천동, 현대아트빌라)
113	남산3호	2018-01-12	14:52:40	서울31 러2683	원용수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6(방배동)
114	남산1호	2018-01-12	14:58:18	22저4026	차범선	10,000	경기도 파주시 가림로 22, 111동 603호(외동동, 가림마을1단지 벽산한라 아파트)
115	남산1호	2018-01-12	15:02:13	53보0164	김미경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11, 402호(한남동)
116	남산1호	2018-01-12	17:32:08	02도0500	오성은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0길 26, 104동 502호(공덕동, 삼성래미안공덕2차아파트)
117	남산1호	2018-01-12	17:50:15	32우8112	김광민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8-20(동선동5가)
118	남산1호	2018-01-12	18:16:17	24저7420	김순자	10,0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들로 110, 102동 1410호(삼일아파트)
119	남산1호	2018-01-12	18:41:37	02우5097	이정연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6길 28, 가동 101호(봉천동, 현대아트빌라)
120	남산1호	2018-01-12	20:13:26	32너9290	박형진	10,00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47, 10동 105호(항동7가, 비취맨션)
121	남산1호	2018-01-15	8:45:07	32누0165	조준희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 2818호(정자동, 정자 아이파크)
122	남산1호	2018-01-15	9:39:26	24가0565	유주희	1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25번길 45-3(상대원동)
123	남산3호	2018-01-15	17:19:32	11로2593	장세원	1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77, 1501호(신정동, 목동대림아크로텔)
124	남산1호	2018-01-15	17:56:35	43수0770	더르지거터브 호출	1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40번길 73, 907동 1504호(호매실동, 칠보마을9단지)
125	남산1호	2018-01-15	19:24:20	68저8959	석재봉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8, 420동 1003호(길음동, 길음뉴타운)
126	남산1호	2018-01-15	19:58:01	15주2507	김의석	10,000	경기도 오산시 청호로 23-11(갈곶동)
127	남산3호	2018-01-15	20:32:47	53구6863	김규대	1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58번길 27-18, B동 501호(관양동, 셰르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1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의견제출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나. 3인 탑승차량, 장애인 차량, 공무(보도용)차량, 저공해/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면제 혹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의견 제출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작성
 - 팩스 : 02-756-1398 ※ 성명, 차량번호, 일자, 사유, 탑승자 연락처 등 필요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소유주변경 사전통지 공시송달 의뢰(2018.4.1.-4.15)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1호	2017-11-06	20:48:32	13호1956	정연민	8,000	대전 서구 갈마동 338-3 갈마가든
2	남산1호	2017-12-18	16:44:46	66하5407	황호순	8,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1동449 9/6 현대아파트 209-1102
3	남산3호	2018-01-04	16:51:15	52호9668	송지한	8,000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60가길 6 103동 501호 (신월동,한백리초빌)
4	남산3호	2018-01-04	20:15:01	54호8604	(주)이젠8 트레이닝	8,00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847 316-33호 (양주 테크노시티)
5	남산1호	2018-01-08	20:31:14	66호1071	김정현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아트폴리스) 801호
6	남산1호	2018-01-15	12:51:00	64하4649	(주)하나 아이플랜	4,000	서울 송파구 삼전동 182-8
7	남산1호	2018-01-16	17:08:44	61하1748	이미경	8,000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01길 11-14 (면목동) 1층 고려소방산업
8	남산3호	2018-01-16	17:54:27	40하2839	하나골프	8,0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9	남산3호	2018-01-17	19:20:25	46하8817	김인숙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0 101동 204호
10	남산1호	2018-01-17	20:32:50	34호1276	최찬영	8,00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2길 48 (내발산동)
11	남산3호	2018-01-18	11:47:51	35호7529	박희정	8,000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한남더힐 110동 904호
12	남산3호	2018-01-19	7:22:26	40하2839	하나골프	8,0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
13	남산3호	2018-01-23	20:49:45	22하1150	이대균	8,000	인천 중구 인항로 30 (신흥동3가, 신흥아이파크) 101동 1004호
14	남산1호	2018-01-24	15:24:01	14호9104	윤식호	8,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92 4층
15	남산3호	2018-01-24	20:15:32	64호2350	주식회사 에버스핀	8,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5층 (여의도백화점 코스콤핀테크 인큐베이션센터)
16	남산1호	2018-01-25	16:34:55	64나4144	셀렉트정보기술 주식회사	8,000	서울 강서구 초원로 22 3층 셀렉트정보기술
17	남산1호	2018-01-25	18:52:52	01호9191	이경원	8,000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52길 58 (신내동)
18	남산1호	2018-01-26	14:39:18	19루2040	김시은	8,000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56 341호 링커스
19	남산1호	2018-01-30	19:09:02	66하6755	이동용	8,000	울산 동구 화암2길 10 402호(방어동)
20	남산1호	2018-01-30	20:28:07	66구7197	(주)에스투비코 퍼레이션	8,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28길 20 JS빌딩 601
21	남산1호	2018-01-30	20:44:50	20호1177	한승빈	8,000	서울시 은평구 음암동 불광천길 410-10
22	남산1호	2018-01-31	12:48:20	55호1191	전성재	4,000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4-24 (홍제동) 4층
23	남산1호	2018-01-31	19:19:51	46하8919	스토리박스	8,000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3 2121호 (개포동, 대청타워)
24	남산1호	2018-02-01	10:02:25	26호6163	엘에스 엔지니어링	8,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69번길 24 (여월동,1층)
25	남산3호	2018-02-01	14:20:08	39호3087	ZHAO GUOQUAN	8,000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6 (답십리동, 센시티 16) 503호
26	남산1호	2018-02-01	19:51:02	01호3006	조봉구	8,000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7 302호(녹번동)
27	남산3호	2018-02-01	20:05:28	39호3352	문종훈	4,0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14-24 (코아루햇빛마을아파트) 102동 104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8	남산1호	2018-02-01	20:28:50	64하8232	주식회사 오감인터티브	8,000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56 코아빌딩 3층
29	남산1호	2018-02-02	11:40:09	49버3511	국승찬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14 350-1번지 우리사진관
30	남산1호	2018-02-02	11:40:43	51부9700	황순옥	8,000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3길 20 서안팰 리스아파트 503호
31	남산1호	2018-02-02	14:01:31	25수0738	(주)동성 이앤씨	8,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75-1 동부이 앤씨 (신천동)
32	남산1호	2018-02-02	18:28:04	15호0755	주식회사 에스더블유 애플	8,0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40 (역삼동) 신논현 마에스트로 1408호
33	남산1호	2018-02-02	18:39:43	29호2422	김아름	8,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720-31
34	남산1호	2018-02-02	19:21:27	46하2414	미래에셋대우빌 딩 주식회사	8,0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대우증권빌딩)
35	남산3호	2018-02-02	19:35:18	36소0972	경수현	8,0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9 동양라디안쿠 1108호
36	남산3호	2018-02-05	7:09:09	67호7686	AN CHENGLONG	8,000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7길 1 202호 (가리봉동, JBW빌딩)
37	남산3호	2018-02-05	12:13:44	63호1770	박산희	8,000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2동 911 호 (법동, 한마음아파트)
38	남산1호	2018-02-05	16:56:11	18하9516	유한회사들꽃	8,000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84-1 3층
39	남산3호	2018-02-06	7:13:56	66호8411	벨치즈코리아 유한회사	8,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길 7 402호 (신사동)
40	남산3호	2018-02-06	12:43:58	54하3462	박성오	8,000	서울 광진구 능동로46길 17-5 (중곡동)
41	남산3호	2018-02-06	13:59:02	18하4936	전기공사 특공대	8,00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10 개룡오피스텔 106호 (당산동)
42	남산1호	2018-02-06	19:33:26	66호8307	(주) 에스브라더스	8,000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74호 (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3	남산1호	2018-02-07	11:05:23	39호1808	(사)대한핸드볼 협회	8,00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0-4 제일빌딩 4층
44	남산1호	2018-02-07	16:31:45	51호9898	(주)아리왕조	8,000	서울 중구 마장로 58 (흥인동, 동대문솔하임) 1003호
45	남산3호	2018-02-08	12:21:01	32호6778	남종현 (형시스템가구)	8,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9 (백현동, SK HUB 오피스텔) C동403호
46	남산1호	2018-02-09	9:09:25	34호3635	김승주	8,0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9 D동 407호
47	남산3호	2018-02-09	18:42:30	01하9050	윤광훈	4,00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72번길 8 2층
48	남산1호	2018-02-12	14:04:35	55호7847	김태연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164번길 20 105동 1502호
49	남산1호	2018-02-12	14:35:50	26호7335	LI SONGLIN	8,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10번길 15 2층
50	남산3호	2018-02-12	17:20:17	55호7847	김태연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1로164번길 20 105동 1502호
51	남산3호	2018-02-12	19:19:33	01하4994	김현정	8,000	서울 용산 이촌로65가길3 한강대우아파트 109동 2304호
52	남산3호	2018-02-13	17:31:04	29호6948	나경신	8,000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301동 1304호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3	남산3호	2018-02-14	16:26:35	15하0447	(주)이즈국제	8,00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층 413호
54	남산1호	2018-02-14	17:56:16	69하6056	박성수	8,000	서울시 서초구 방배선행길 1 106동 805호
55	남산1호	2018-02-14	19:11:15	64호3964	안재우	8,000	서울 구로구 고척로6길 21 (오류동)
56	남산1호	2018-02-19	17:48:10	20호8222	김경식	8,000	서울 은평구 갈현로 33가길 11-5 4층
57	남산1호	2018-02-22	11:50:10	14하5881	YANG YINZHE	8,000	서울 강남구 논현로67길 24-1 303호 (역삼동, 인디하우스)
58	남산1호	2018-02-22	16:13:07	66하9475	김윤지	8,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2-26번지 201호
59	남산1호	2018-02-22	17:22:04	61하7470	(주)네오비전	8,00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1003호 (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60	남산1호	2018-02-23	9:43:06	29호8645	김주안	8,0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13번길 8-15 302호
61	남산3호	2018-02-23	10:08:13	67하1097	주식회사 위로드	8,00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71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62	남산1호	2018-02-23	10:16:12	69호4792	바이올가	8,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69번지 흥덕 마을 신동아 파밀리에 1207-1801
63	남산1호	2018-02-23	12:57:03	66하2446	전민혁	8,0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길 47 202호
64	남산1호	2018-02-23	19:03:47	56하8204	양창용	8,000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 107동 1009호 (종암동, SK아파트)
65	남산3호	2018-02-23	19:46:44	50호3675	노한웅	8,000	대전 서구 도솔로505번길 41 205호 (용문동, 헤민빌라)
66	남산1호	2018-02-26	12:47:41	20호5035	김기태	8,000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26 104동 1006호
67	남산1호	2018-02-26	16:42:45	50도2624	최희영 (자연가득찬)	8,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86번길 92 (온천동)
68	남산1호	2018-02-26	20:33:10	36호8169	박창욱	8,000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709 2층 203호
69	남산3호	2018-02-27	7:59:53	64하5818	임동혁	8,000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87
70	남산1호	2018-02-27	8:03:51	34호4028	김용범	8,000	경기도 하남시덕풍서로65하남풍산아이파크5 단지아파트 503동 804호
71	남산1호	2018-02-27	10:05:48	20호2609	홍은정	8,000	경기 양주시 삼승로 58번길 115 102동 603 호 (양주 자이아파트)
72	남산3호	2018-02-27	12:11:10	20호2609	홍은정	8,000	경기 양주시 삼승로58번길 115 603동102호
73	남산3호	2018-02-27	20:29:34	64하9051	fst (퍼스텍) (신상운)	8,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 1213 화물터미널내 1층
74	남산1호	2018-02-28	8:42:50	23하9587	강준삼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3 807호 (그라테아)
75	남산3호	2018-02-28	12:57:00	20호2340	김종진	8,000	서울 은평구 갈현로23길 5-3
76	남산3호	2018-02-28	17:30:46	46하1510	조연주	8,000	광주 서구 마재로 57 102동 2002호 (금호동, 마재마을주은아파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21호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송달 대상자의 성명 : 형철우
- 주소 또는 거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9다길 6(영등포동)
-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주행분) 독촉고지
- 공고기간 : 2018. 5. 14. ~ 2018. 5. 27.
- 서류의 주요 내용 : 자동차세(주행분) 독촉고지 및 세액산출내역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5월 4일, 9일 2회에 걸쳐 귀하에게 교부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납부기한을 2018년 6월 10일로 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김곤휘(02-2133-339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2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미령환경개발
2. 대표자 : 이 재 관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51 대산빌딩5층 (☎ 02-422-6462))
4. 업종 : 유독물관리대행기관 및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유독물관리[제9호], 대기환경관리[제3호]
6. 지정일자 : 2018. 5. 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27호

문화재수리업 등 합병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합병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문화재수리업등 합병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합병일
흡수 합병 한 회사	주식회사 새한티엠씨	보수단청업 (01-01-0015)	110111-6068509	고주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2동 302호 (경운동, 운형공노허브)	02-733-9404	'18.04.06
흡수 합병 된회사	주식회사 티엠새한	보수단청업 (01-01-0015)	134611-0020292	고주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2동 302호 (경운동, 운형공노허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0)
또는 역사문화재과(☎ 02-2133-2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31호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체 연락처	등록일
주식회사 다한건축	보수단청업 (01-01-0023)	110111-6685303	한민주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3 나길 23(사직동)	010-4167-0835	'18.05.1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0)
또는 역사문화재과(☎ 02-2133-2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37호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01.15.)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7호(2018.05.17.)로 공원조성(변경)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남산1근린공원 내 중구 회현동1가 100-177번지 일대의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열람공고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를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한양도성도감(☎ 2133-2671)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실시계획인가(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실시계획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시행면적	최초 공원조성 결정일	비 고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중구 회현동1가 100-177외 12필지	43,630.7㎡	2009. 1.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붙임

바. 열람개요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한양도성도감 (☎ 02-2133-2671)

사.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서류(도서)를 열람기간 중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 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사업의 명칭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산구 후암동 30-65	대	337.2	337.2	기획재정부	-				
2	용산구 후암동 30-66	대	1,114	1,114	기획재정부	-				
3	용산구 후암동 30-80	대	4,128	780.9	기획재정부	-				
4	용산구 후암동 30-84	대	44,872.1	7,546.2	기획재정부	-				
5	중구 회현동1가 100-166	공원	168.6	168.6	재무부	-				현 기획재정부
6	중구 회현동1가 100-177	공원	3,127.3	599.6	기획재정부, 교육부	-				
7	중구 회현동1가 100-266	공원	2,825	2,802.6	재무부, 교육과학기술부	-				현 기획재정부 현 교육부
8	중구 회현동1가 100-267	공원	7,279.8	7,268.6	재무부, 교육과학기술부	-				현 기획재정부 현 교육부
9	중구 남대문로 5가 471-1	도	60.3	60.3	건설교통부	-				현 국토교통부
10	중구 남대문로 5가 471-2	공원	3,426.4	905.5	국가보훈처	-				
11	중구 남대문로 5가 471-3	공원	202	81	기획재정부	-				
12	중구 회현동 1가 산 1-2	임	82,724	20,445.2	산림청	-				
13	중구 후암동 산 1-117	임	1,521	1,521	산림청	-				

물 건 조 서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사 업 의 명 칭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산1-2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2층) 109.20㎡	공중 화장실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2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00-267	건물	경량조립식 구조	건물(1층) 10.35㎡	매점	이*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92, 116동 1104호 (북한산힐스테이트 7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245호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1. 지정유형 : 생태문화형 보행자전용길
2. 지정대상 : 안산자락길 전구간(L=7.0km)
3. 소재지 : 서대문구 안산 내 8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봉원동, 연희동, 홍제1동)
4. 운영일 : 2018년 7월 1일 부터
5. 지정필요성
 - 가. 안산자락길은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이며 보행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도보길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나, 일부 이륜차 이용자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이에 ‘안산자락길’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6. 주요내용
 -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
 - 나. 지구 지정 후 해제 시까지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하는 차마의 운전자에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차마(車馬)의 운전자가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1), 2) 및 3)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5)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5만원 - 3만원

〔「도로교통법」 제2조17호〕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7.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보행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주희 주무관(☎ 02-2133-2420, FAX 02-2133-1052, E-mail : blueoce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위치도



붙임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보행정책과장 백운석, 보행정책팀장 서인석, 담당 홍주희									
4. 근거법령명등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30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별표3 ○ 도로교통법 제2조					관 련 규제수		2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차마의 운전자									
6. 규제존속기한	○ 보행자전용길 지정 해제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되는 안산자락길에 차마 운전자의 진입 및 통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안산자락길은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는 물론, 휠체어, 유모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길임
- 이러한 ‘무장애’ 여건 때문에 일부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락길을 이용하여 주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요청이 지속되어왔으나, 단순한 ‘숲길’로서는 현행 법규상 이를 시행할 근거가 없어,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요청한 사항임
- 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모두 시행하였고, 유관부서 협의 결과 이의없는 사항으로 ‘안산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여,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자락길을 이용해왔던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발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시(안)을 마련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기존의 자락길 관리인력을 활용하여 위반차마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체수단 및 기존 규제수단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보행자전용길’을 통행한 차마가 단속될 경우, 위반 차마의 소유주에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3~5만원을 부과하게 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는 물론 휠체어, 유모차 등 연간 60만명의 안산 자락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규제사항으로, 서울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건강개선 등의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보행자전용길’에 진입한 차마의 경우에는 과태료 3~5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규제로 인한 불편은 자전거 등 이륜차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로 인해 안산자락길을 이용하는 연간 60만명 시민의 직접적인 보행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에 대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차마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 ☐ 아울러 동법 동 조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행자전용길 지정 시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2조에 의거 ‘보행자길’로서 요건을 갖춘 ‘안산 자락길’에 대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하여 차마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항임
- ☐ 또한, 동법 제16조제7항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기한 내에서 시행할 예정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 기존 안산자락길의 행정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예정으로 추가로 신설되는 행정기구는 없음
- ☐ 다만, 보행자전용길 지정 홍보를 위한 안내판 및 과태료 부과 안내 현수막 등의 설치를 위해 시설물 설치비용(6,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

구 고 시

◆도봉구고시 제2018-62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0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1일대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2091-3753)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7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1 일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23,825㎡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일로부터 2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 등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3,825	23,825							
1	창동 산156-5	임야	2,051	2,051	윤명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신사동)	6/12				
					윤광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에이동2902호(정자동,로얄펠리스)	4/12				
					윤은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06동601호(구미동,까치마을)	1/12				
					윤성원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아주 록휘드시 어함코트 3167	1/12				
2	창동 산159-1	과수원	10,243	10,243	이행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 304동 303호(창동, 주공아파트)	273/1001				
					윤영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8, 604동 210호(쌍문동, 한양아파트)	122/1001				
					주희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98-126(창동)	44/1001				
					주태광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02-16, 102동 104호(문암동, 범양아파트)	44/1001				
					주하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132동801호(비산동,비산삼성래미안)	154/1001				
					주순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	154/1001	김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330동 303호 (목동신시가지A3단지)	지분가압류 근저당권가처분	
								노원 세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14 (재산법인세과-694)	압류	
								강남 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 (숨긴재산추적과-9113)	압류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징수과-7535)	압류	
								조정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112동 2001호(옥수동, 레미안 옥수 리버젠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김용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98-122(창동)	90/1001				
					주희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119, 1803동104호(창동,주공아파트)	60/1001				
					주태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 409동 1107호(창동, 주공아파트)	60/100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창동 산160-3	임야	198	198	이용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5번길 15, 201동 703호(양수리 아이파크)	1/3				
					이용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701 앤디스트리트 크리스토스 12722 이스트	1/3				
					이용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4, 1동 1206호(수유동, 극동아파트)	1/3				
4	창동 산193-1	임야	11,333	11,333	이화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110동 1204호 (서초동,서초래미안아파트)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산156-5	배나무	R5~47cm	131	주	윤명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9길 28, 401호 (신사동)	양철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6-1	배나무 재배	
					윤광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에이동 2902호(정자동,로얄펠리스)					
					윤은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06동 601호(구미동,까치마을)					
					윤성원	미합중국 61109 일리노아주 록훅드시 어함 코트 3167					
2	창동 산159-1	창고	시멘트브럭조	36	㎡	이행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50, 304동 303호 (창동, 주공아파트)	이인열 최수민 박규열 김용연 곽소래 주순희 주희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6길 98-118	거주자	
		건물	시멘트브럭조	34	㎡	윤영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58, 604동 210호(쌍문동, 한양아파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6길 98-122		
		건물	시멘트브럭조	54	㎡	주희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98-126(창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6길 98-126		
		건물	시멘트브럭조	95	㎡	주태광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02-16, 102동 104호(돈암동, 범양아파트)				
		건물	시멘트브럭조	71	㎡	주하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35, 132동 801호 (비산동,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창고	시멘트브럭조	6	㎡	주순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				
		장독대	시멘트브럭조	4	㎡	김용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98-122(창동)				
		화장실	시멘트브럭조	2	㎡	주희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70길119, 1803동104호(창동,주공아파트)				
		수도	1m×1m	2	개소	주태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49, 409동 1107호(창동, 주공아파트)				

◆ 은평구고시 제2018-51호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구역결정 및 은평구공고 제1998-68호(1998.03.2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03.08.)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재정비)결정된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응암동 353-1 외 4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 및 선택적) 변경 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을 변경결정(경미한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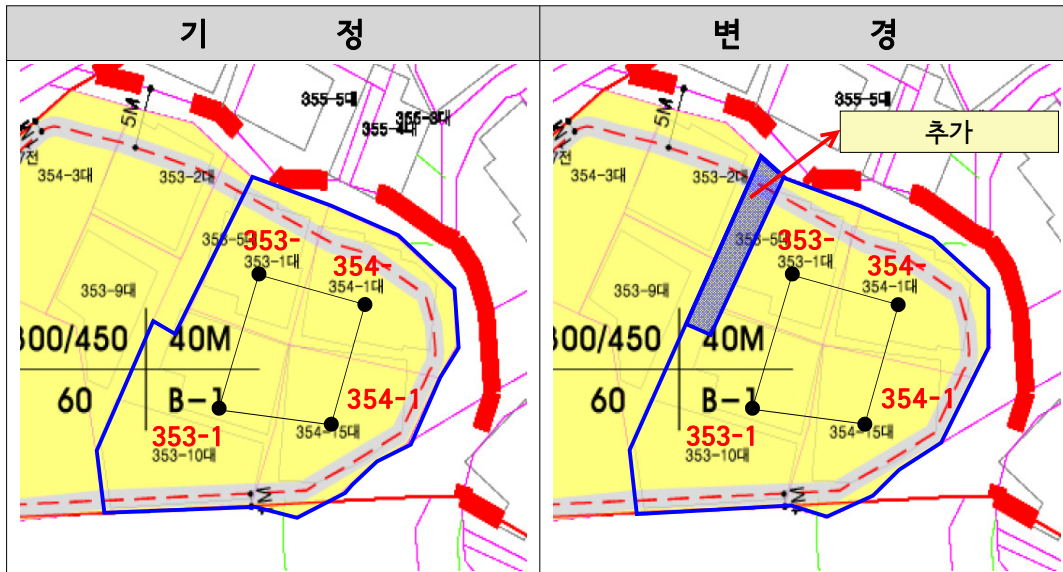
- 기 공동개발 지정('17.11.30.)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4필지)와 선택적 공동개발이 가능한 토지(1필지)를 일단의 대지(5필지)로 개발(건축행위)이 가능토록 함.

나.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공동개발면적(㎡)	계(㎡)	비 고
기 정	응암동	353-1	96	585	공동개발 지정 (은평구고시 제2017-113호, '17.11.30.)
		353-10	214		
		354-1	139		
		354-15	136		
		353-5	36	-	선택적 공동개발
변 경	응암동	353-1	96	621	• 공동개발 지정(4필지)토지와 선택적 공동개발(353-5) 토지는 • 일단의 대지로 공동개발(621㎡)이 가능함
		353-10	214		
		354-1	139		
		354-15	136		
		353-5	36		

다. 도시관리계획(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공동개발 필지 : 용암동 353-1, -5, -10, 354-1, -15)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8-3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명 및 주소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명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88, 1층)
 (주)지에스건설 대표자 임병용, 허창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나. 면적 및 규모

구분	구 모			대지면적 (㎡)	건축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조경면적 (㎡)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용검사 예정일)
	층수 (지상/ 지하)	동	세대수							
기정	38/3	8	935	21,201	140,187.62	48.78	469.19	4,715.12	469,248,857	2021.04
변경	38/3	8	959	21,067.4	138,368.96	49.12	462.51	4,679.47	557,744,420	2021.04

4. 사업시행기간 : 2018. 05~2021. 04.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시행기간	2017. 11. ~ 2021. 4.	2018. 05. ~ 2021. 04.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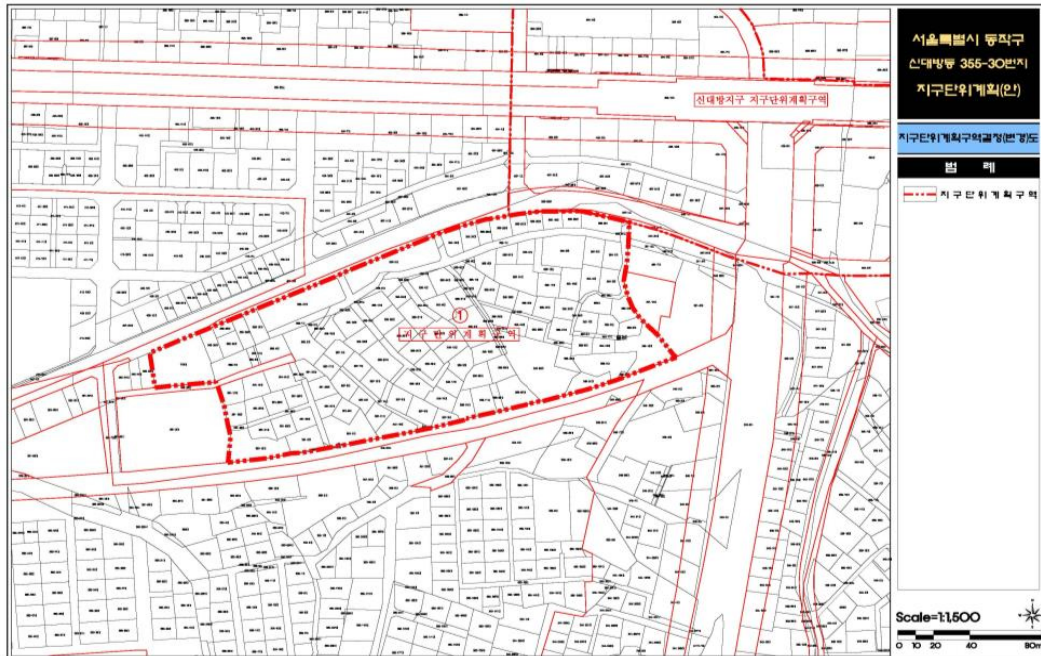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23,733	감) 133.6	23,599.4	좌표측량에 따른 면적감소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①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23,599.4	• 좌표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133.6㎡)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나) 용도지역 (변경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결정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1,131 (596)	14,804 (1,752)	-	-	-	1	320 (252)	4,843 (491)	2	811 (344)	9,961 (1,261)
대로	-	-	-	-	-	-	-	-	-	-	-	-
중로	2	1,045 (510)	14,224 (1,172)	-	-	-	1	320 (252)	4,843 (491)	1	725 (258)	9,381 (681)
소로	1	86 (86)	580 (580)	-	-	-	-	-	-	1	86 (86)	580 (580)

※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320 (252)	신대방동 408-1	신대방동 362-25			서고 2008-501 (2009.1.2.)	
기정	중로	3	174	12~15	집산 도로	725 (258)	신대방동35 1-5	신대방동 395-7			서고 550호 (85.8.1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86 (86)	신대방동 347-27	신대방동 351-5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해당사항임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신대방2동 주민자치센터	신대방동 723번지	780	-	-	-	연면적:2,662.67㎡ (지하2층,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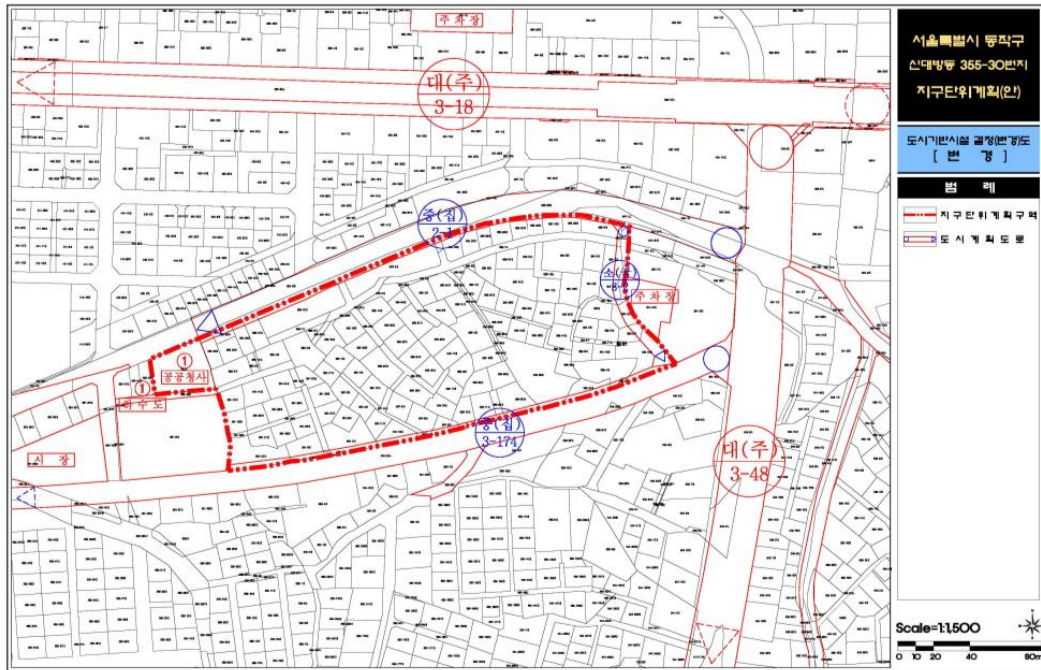
※ 지번합필로 인한 지번 변경

다) 하수도 (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수도	신대방동 362-21	신대방동 362-7		56	125	동작구 2003-94 (2003.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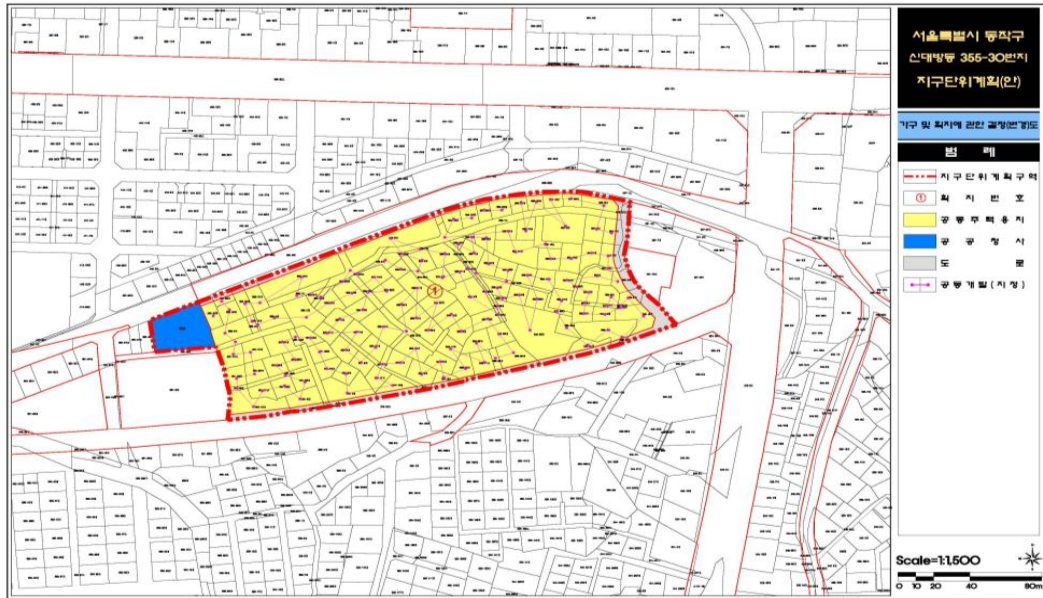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3,733	감)133.6	23,599.4	
획지 계획	소계	-	21,981	감)133.6	21,847.4	
	획지①	동작구 신대방동 355-30번지 외 149필지	21,201	감)133.6	21,067.4	공동주택용지
	획지②	동작구 신대방동 723번지	780	-	780	공공청사
기반 시설	소계	-	1,752	-	1,752	
	도로	동작구 신대방동 355-26번지 외 17필지	491	-	491	중로 2-1호선
		동작구 신대방동 361-6번지 외 19필지	681	-	681	중로 3-174호선
		동작구 신대방동 355-27번지 외 9필지	580	-	580	소로 3-2호선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권장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지정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3호 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불허용도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제외) -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8호의 장례식장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A-1	• 60% 이하	
A-2	• 50% 이하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기준용적률	25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2-3-1에 의한 기준용적률 적용	
허용용적률	450%	• 장기전세주택공급+리모델링이 쉬운구조+커뮤니티지원시설+친환경 건축물 적용	
상한용적률	47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450% × (1 + 1.3 × 1 × 0.083) = 498.56%	

라)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최고높이	• 최고높이 130m이하	

■ 배치·색채 및 외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①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배 치	• 판상형 및 탑상형 배치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담 장	• 투시형구조로 설치	

주)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5) 비주거시설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운영 기준	계획	
		기 정	변 경
①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1) 지상층 연면적 10%이상의 비주거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2) 자치구청장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 단,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 100,460.05㎡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10,046.00㎡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10,218.32㎡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0,218.32㎡ ∴ 10,046.00㎡ (10.0%) < 10,218.32㎡ (10.17%)	- 지상층 연면적 : 98,426.20㎡ - 법정 비주거시설 면적 : 9,842.62㎡이상 - 비주거시설 확보면적 : 10,343.18㎡ – 지상층 비주거시설 : 10,343.18㎡ ∴ 9,842.62㎡ (10.0%) < 10,343.18㎡ (10.51%)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준용

주)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6)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계획

획지번호	운영 기준	계획	
		기 정	변 경
①	- 원칙적기준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과반이상 계획 - 권장기준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60㎡ 이하 : 60% 내외 (2)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30% 내외 (3) 전용면적 85㎡ 초과 : 10% 내외	- 전용면적 60㎡ 이하 – 78.4%(181세대)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21.6%(50세대)	- 전용면적 60㎡ 이하 – 89.9%(232세대)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10.1%(26세대)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준용

주)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7) 허용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 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리,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벽체 부분 설치	건축위원회 결정 사항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선택 항목	커뮤니티 지원시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기 정 - 계획 : 3.04% (2,742.34㎡)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90,241.73㎡)	변 경 - 계획 : 3.11% (2,642.49㎡)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88,083.02㎡)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에너지효율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86점 이상이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친환경 건축물	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주택사업은 최우수 등급, 기타 건축·주택사업은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 이상 인증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이행
	신재생 에너지사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일반건축물은 3%이상을 설치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설치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또는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개 항목 선택 적용
	역사문화 보전계획	사업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구 등에 포함된 경우 보전 계획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	-		

주) 커뮤니티 지원시설 관련하여 첨부된 커뮤니티 운용계획서 준용

주) 향후 건축 인·허가 시 변경 될 수 있음

8) 공공시설 부담계획 (기정)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면적	22,953㎡	-	-	22,953㎡	-	
공공시설부담율		25%	20%	15%	-	
공공시설의무면적	3,442.95㎡	-	-	3,442.95㎡	-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공공시설 확보면적	1,752.0㎡	－	－	1,752.0㎡	－	구역면적의 7.6%
세대수 및 면적	구 분	합계	60㎡ 이하	60㎡~85㎡	85㎡ 초과	대지면적(㎡)
	합 계(세대)	935 (100.0%)	617 (66.0%)	318 (34.0%)	－	21,201.00 (100.0%)
	분양(세대)	704 (100.0%)	436 (61.9%)	268 (38.1%)	－	16,803.90 (79.3%)
	SHIFT(세대)	231 (100.0%)	181 (78.4%)	50 (21.6%)	－	4,397.10 (20.7%)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장기전세 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같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752.0㎡ (순부담율 : 7.6%) + 4,397.1㎡ (SHIFT : 19.2%) = 6,149.1㎡ (계획 : 26.8%)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42.95㎡의 ½ = 1,721.5㎡(7.5%) ≤ 1,752.0㎡(7.6%) 확보 － 장기전세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같음 • 확보면적 : 4,397.1㎡(19.2%)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인 도로(1,752㎡) 등의 순부담 면적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 (4,397.1㎡)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주)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 780㎡은 부담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8) 공공시설 부담계획 (변경)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면적	22,819.4㎡	—	—	22,819.4㎡	—	
공공시설부담율		25%	20%	15%	—	
공공시설의무면적	3,422.9㎡	—	—	3,422.9㎡	—	
공공시설확보면적	1,752.0㎡	—	—	1,752.0㎡	—	구역면적의 7.6%
세대수 및 면적	구 분	합계	60㎡ 이하	60㎡~85㎡	85㎡ 초과	대지면적(㎡)
	합 계(세대)	959 (100.0%)	665 (69.3%)	294 (30.7%)	—	21,067.4 (100.0%)
	분양(세대)	701 (100.0%)	433 (61.7%)	268 (38.3%)	—	16,641.8 (78.9%)
	SHIFT(세대)	258 (100.0%)	232 (89.9%)	26 (10.1%)	—	4,425.6 (21.1%)

구분	합계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비고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 면적의 1/2을 부담률로 같음할 수 있음					전체 기부채납 면적 : 1,752.0㎡ (순부담율 : 7.6%) + 4,425.6㎡ (SHIFT : 19.4%) = 6,177.6㎡ (계획 : 27.0%)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 순부담 확보면적 :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 이상 • 3,422.9㎡의 1/2 = 1,711.4㎡(7.4%) ≤ 1,752.0㎡(7.6%) 확보 - 장기전세주택 확보면적 : 공공시설 부담율의 1/2 같음 • 확보면적 : 4,425.6㎡(19.2%) 확보 ■ 본 사업대상지는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이상인 도로(1,752㎡) 등의 순부담 면적을 설치하였으며, 공공시설 의무면적의 1/2은 무상양여한 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 (4,425.6㎡)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의무면적 이상으로 계획하였음					

주)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 780㎡은 부담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9)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1,75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52㎡	
가중치	1.0	• 가중치=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250% / 250% = 1.0	
α	0.083	• α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752㎡ / (22,819.4㎡ - 1,752㎡) = 0.083	
기준용적률	25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2-3-1에 의한 기준용적률 적용	
허용용적률	450%	• 장기전세주택공급+리모델링이 쉬운구조+커뮤니티지원시설+친환경 건축물 적용	
상한용적률	47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 α) = 450% × (1 + 1.3 × 1 × 0.083) = 498.34%	
설계용적률	462.51%	• 기정 : 469.19% • 변경 : 462.51%(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감소)	

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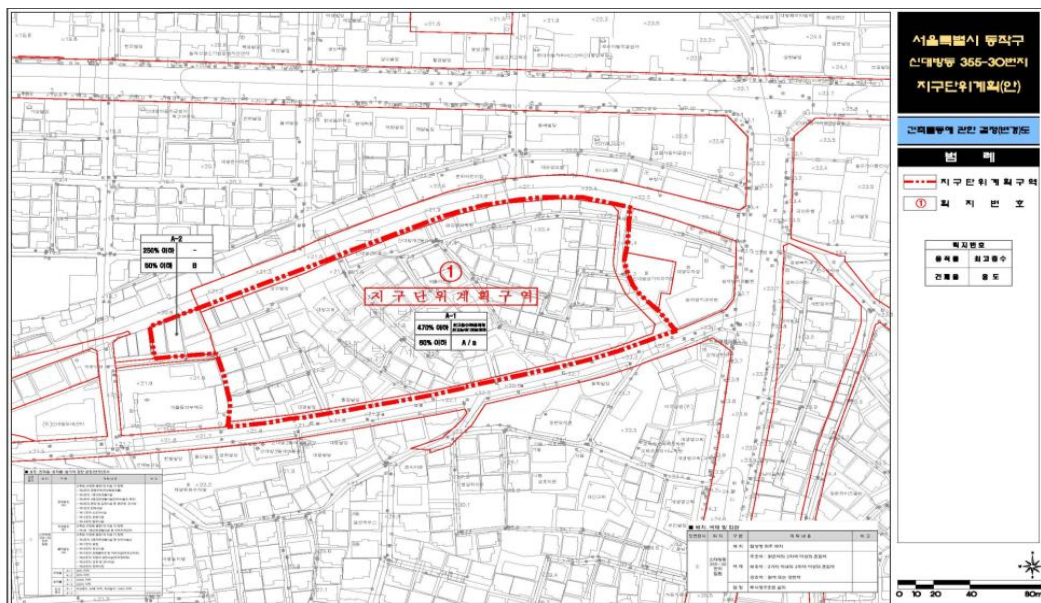
주) 주민자치센터 대체부지 780㎡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10)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구 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계획 내용		비고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용	shift 공급 용적률 (완화된 용적률의 50/100)	100.0% 이상		
		기정	변경	
		100.11%	100.38%	
	기준용적률	250.0% 이하		
	허용용적률	450.0% 이하		
	상한용적률	470.0% 이하		

구 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계획 내용		비고
공공시설 부담률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3,422.9㎡		
	용도지역 2단계 상향시 20% 이상	-		
	용도지역 3단계 상향시 25% 이상	-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이상 3%(최소450㎡)이상	기 정	변 경	
		공동주택 연면적 : 90,241.73㎡ 의무면적 : 90,241.73㎡ * 0.03 = 2,707.25㎡ (3.0%) 계획면적 : 2,742.34㎡ (3.01%)	공동주택 연면적 : 88,083.02㎡ 의무면적 : 88,083.02㎡ * 0.03 = 2,642.49㎡ (3.0%) 계획면적 : 2,738.49㎡ (3.11%)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11)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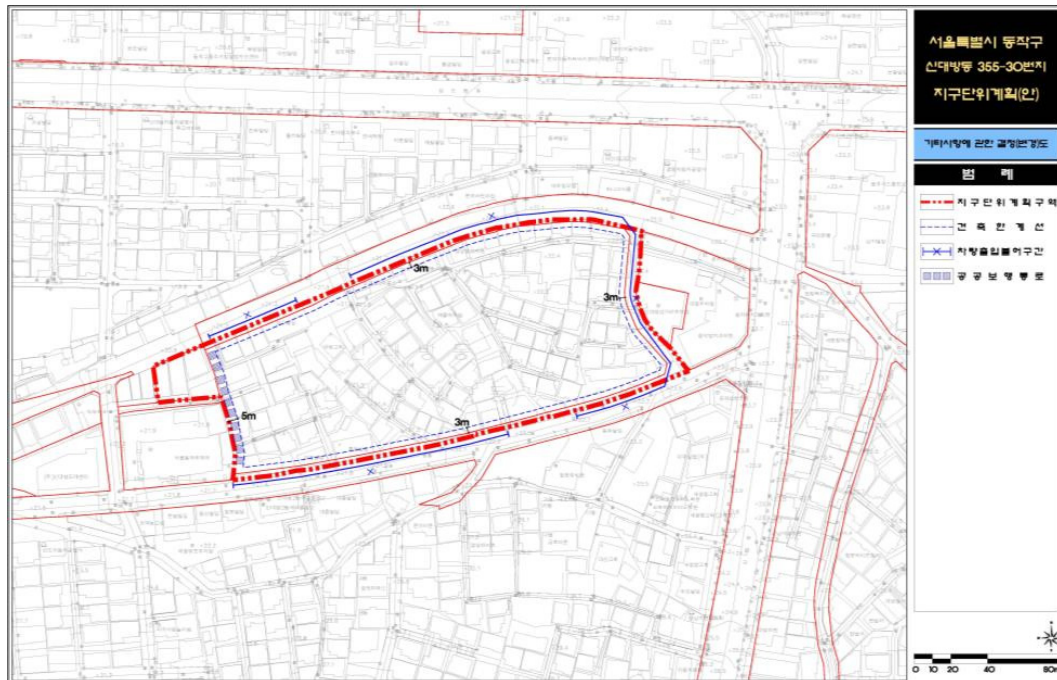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신대방동 355-30번지 일원	• 중로2-1, 중로3-174, 소로3-2 노선변 3m지정	
		• 대상지 서측변 5m지정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5m)	결정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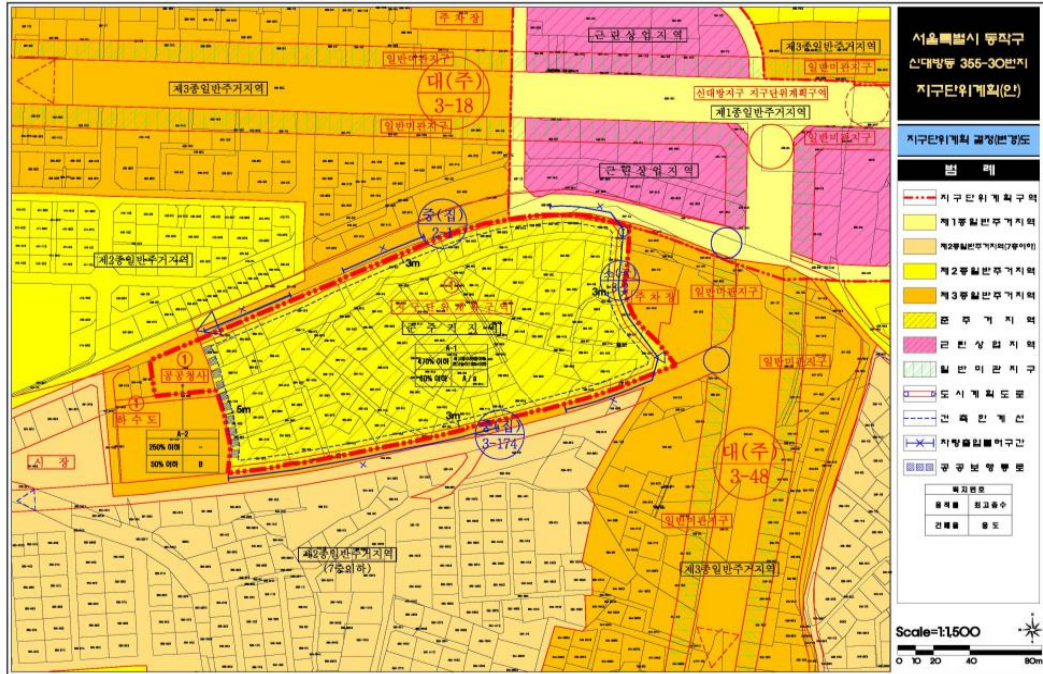
나) 차량 진입 · 출입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2-1호선, 중로3-174호선 일부구간 불허구간 지정 - 소로3-1호선 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외의 구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종합 결정도



6. 커뮤니티 운영 계획 (변경 없음)

1) 시설현황

■ 교육커뮤니티(지상 1층)

- 직장인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키즈카페와 어린이도서관 운영

■ 건강커뮤니티(지상 2층)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피트니스 시설 운영

2) 세부운영계획

구분	세부 운영 지침
역세권 개발사업자 (조합)	○ 사업수지분석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커뮤니티지원시설 사업자 선정 전 공고 전 구청과 협의 ○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분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되 공공운영 사업자 우선 선정(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 사업자는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용도에 맞게 필요 시 기자재 및 인테리어 설치 후 이를 포함하여 분양가를 산정하되 공공사업운영이 가능한 최소 분양가(50~70%수준)를 구청과 협의하여 산정 ○ 지역 내 공공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또는 대행사)에서 사단법인 등 법인격이 부여된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토지소유권은 신탁사 등에 양도하고 건물만을 사단법인 등 법인격이 부여된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선별된 인력 확보)

구분	세부 운영 지침
커뮤니티지원 시설 운영자	○ 지역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방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구청과 협의 후 운영 ○ 세부계획 상 지구단위계획(안)의 커뮤니티지원시설에 대한 계획을 재검증하여, 필요시 운영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필요 커뮤니티지원시설에 대하여 구청과 협의 후 착공 전까지 재수립 ○ 영리 목적을 위한 운영이 아니므로 사업수지분석 수립 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 설정
지역 커뮤니티	○ 본 사업의 입주인 및 대방동, 신대방1·2동, 상도3·4동 주민자치협의회 및 해당 아파트 주민대표 등과 커뮤니티 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시설 운영 후 주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유지
구청	○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운영계획 검토 후 공공운영 사업자 우선 선정에 필요한 행정지원 ○ 선정 사업자 사업방안 검토 후 지속적 운영 관리 감독 ○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지원 및 관리 감독 ○ 동종의 구립 운영시설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구내 공공기관을 통하여 커뮤니티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기타 행정지원

7.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 820-96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고시 제2018-37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8호(2012.09.13)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6호(2013.07.1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5-8호(2015.01.29.)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된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동작구 사당동 42번지 일대	30,647.5	감)651.0	29,996.5	-

※ 지적측량 결과 반영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0,647.5	감)651.0	29,996.5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0,647.5	감)651.0	29,996.5	100.0	-

※ 지적측량 결과 반영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647.5	감) 651.0	29,996.5	100.0	•경문고부지 추가(2필지) •종교시설(교회) 제척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4,992.1	감) 67.4	4,924.7	16.4	-
	도 로		3,273.3	증) 44.6	3,317.9	11.1	-
	공 원		1,718.8	감) 112.0	1,606.8	5.4	-
	소공원1		1,249.0	감) 112.0	1,137.0	3.8	•경문고부지 추가
	소공원2		469.8	-	469.8	1.6	-
획 지	소 계		25,655.4	감) 583.6	25,071.8	83.6	-
	획지1	공동주택	15,981.6	감) 230.4	15,751.2	52.5	•도로 변경에 따른 획지 변경
	획지2	공동주택	6,739.0	증) 273.6	7,012.6	23.4	•도로 변경에 따른 획지 변경
	획지3	종교시설(성당)	1,736.0	-	1,736.0	5.8	-
	획지4	종교시설(교회)	837.8	감) 837.8	-	-	•제척
	기정 변경	획지5 획지4	어린이집 361.0	증) 211.0	572.0	1.9	•획지5→획지4 변경 •경문고부지 추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7~12	국지 도로	216	사당동 42-4	사당동 67-8	일반 도로	-	`2013.7.11 (서고제226호)	-
기정	중로	3	2	7~25	국지 도로	210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	`2013.7.11 (서고제226호)	-
변경	중로	3	2	7~25	국지 도로	213	동작동 산4-2	사당동 43-2	일반 도로	-	`2013.7.11 (서고제226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2	중로3-2	• 선형 변경 및 연장 증가 (210→213m)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및 연장 증가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1	사당동 41번지 일대	1,249.0	감)112.0	1,137.0	-	•면적감소 및 위치변경
기정	②	공원	소공원2	동작동 58-107번지일대	469.8	-	469.8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공원1	• 면적감소 및 위치변경 (1,249.0→1,137.0㎡)	• 획지4(어린이집)의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위치변경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고등 학교	동작동 산4-2	35,690.0	감)1,111.0	34,579.0	78.8.8	• 면적감소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 완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30	-	120	-	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학교	• 면적 감소 (35,690→34,579㎡)	• 정비구역 내 경문교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면적 감소(281㎡) 및 도시계획시설 당초 면적과 학교편입(지적)면적 오차 정정(830㎡)을 위한 면적 감소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사당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647.5	사당동 41-17번지 일대	112	2	-	110	-	
변경	사당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9,996.5	사당동 42번지 일대	111	2	-	109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기정	사당3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30,647.5	획지1	15,981.6	사당동 41-17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 설	27.4 이하	220.14	227.72	45m 이하/ 15층 이하/ 13층 이하																				
			획지2	6,739.0	동작동 58-107 번지 일대																									
변경		29,996.5	획지1	15,751.2	사당동 42 번지 일대		30 이하	220.38	224.00																					
			획지2	7,012.6	동작동58-107 번지 일대																									
기정	● 주택공급계획 <table><tr><th>구분</th><th>세대수 (소형주택)</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522 (14)</td><td>100.00</td><td>—</td></tr><tr><td>60㎡ 이하</td><td>203 (14)</td><td>38.89</td><td>—</td></tr><tr><td>60~85㎡이하</td><td>307</td><td>58.81</td><td>—</td></tr><tr><td>85㎡ 초과</td><td>12</td><td>2.30</td><td>—</td></tr></table> ● 85㎡ 이하 규모 세대수 비율 : 97.7% , 85㎡ 이하 규모 연면적 비율 96.9%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522 (14)	100.00	—	60㎡ 이하	203 (14)	38.89	—	60~85㎡이하	307	58.81	—	85㎡ 초과	12	2.30	—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522 (14)	100.00	—																											
60㎡ 이하	203 (14)	38.89	—																											
60~85㎡이하	307	58.81	—																											
85㎡ 초과	12	2.30	—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table><tr><th>구분</th><th>세대수 (소형주택)</th><th>비율(%)</th><th>비고</th></tr><tr><td>계</td><td>514 (7)</td><td>100.00</td><td>—</td></tr><tr><td>60㎡ 이하</td><td>193 (7)</td><td>37.55</td><td>—</td></tr><tr><td>60~85㎡이하</td><td>306</td><td>59.53</td><td>—</td></tr><tr><td>85㎡ 초과</td><td>15</td><td>2.92</td><td>—</td></tr></table> ● 85㎡ 이하 규모 세대수 비율 : 97.1% , 85㎡ 이하 규모 연면적 비율 95.8%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514 (7)	100.00	—	60㎡ 이하	193 (7)	37.55	—	60~85㎡이하	306	59.53	—	85㎡ 초과	15	2.92	—
구분	세대수 (소형주택)	비율(%)	비고																											
계	514 (7)	100.00	—																											
60㎡ 이하	193 (7)	37.55	—																											
60~85㎡이하	306	59.53	—																											
85㎡ 초과	15	2.92	—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신설(폭원 5m) — 위치 : 세림아파트부지 경계부																											
기정	심의완화사항		●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 층수완화 — 7층 이하 → 평균 13층 이하																											

다)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정내용					
기정	토지이용 계 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계 획 정비기반 시 설	계획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정비기반시설 (도로 내 법면)
		30,647.5㎡	25,655.4㎡	4,992.1㎡	250.0㎡	1,187.0㎡	425.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율 : 11.60%(3,555.1㎡) > 순부담 의무부담율 10%(3,064㎡)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992.1㎡ - 250.0㎡ - 1,187.0㎡ = 3,555.1㎡ ※ 주) 총수완화 면적 : 30,647.5㎡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20.14% 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190% × (1+1.3 × 0.1220) = 220.134%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여 국·공유지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내 법면1))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3,130.1㎡ / 25,655.4㎡ = 0.1220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27.72%					
변경	토지이용 계 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계 획 정비기반 시 설	계획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 정비기반시설 (도로 내 법면)
		29,996.5㎡	25,071.8㎡	4,924.7㎡	270.1㎡	949.4㎡	621.6㎡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율 : 12.35%(3,705.2㎡) > 순부담 의무부담율 10%(2,997㎡)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 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4,924.7㎡ - 270.1㎡ - 949.4㎡ = 3,705.2㎡ ※ 주) 총수완화 면적 : 29,996.5㎡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20.38% 이하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 × α) = 190% × (1+1.3 × 0.1230) = 220.38% ※ 계획(기준)용적률 = 190%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무상양여 국·공유지 -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내 법면1))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 3,083.6㎡ / 25,071.8㎡ = 0.1230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24.00%					

주) 총수완화 면적은 주민제안 시 전체면적으로 제출됨.

- 1)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되는 정비기반시설 : 공공성을 고려하여 순부담에 포함하되,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주민제안 된 사항임

5)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획지1	15,981.6	1동	886.72	14세대	41.98㎡	—
변경	획지2	7,012.6	1동	438.89	7세대	41.94㎡ : 4세대 51.97㎡ : 3세대	—

■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적 용 산 식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27.72%	
		정비계획 용적률	220.14%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3.7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사업부지 면적 = 3.79% × 22,720.6㎡ = 861.11㎡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886.76㎡ • 세대수 : 14세대 - 전용 41.98㎡ (공급 63.34㎡) : 14세대		기준 이상 확보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24.00%	
		정비계획 용적률	220.38%	
	증가된 용적률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1.8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0조
	연면적 환산	• 증가된 용적률의 50% × 순사업부지 면적 = 1.810% × 22,763.80㎡ = 412.02㎡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공급면적) : 438.89㎡ • 세대수 : 7세대 - 전용 41.94㎡ (공급 57.39㎡) : 4세대 - 전용 51.97㎡ (공급 69.77㎡) : 3세대		기준 이상 확보

6)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당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74세대 증가	기존:348세대 계획:522세대
변경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당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166세대 증가	기존:348세대 계획:514세대

2. 지형도면 : 붙임 첨부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전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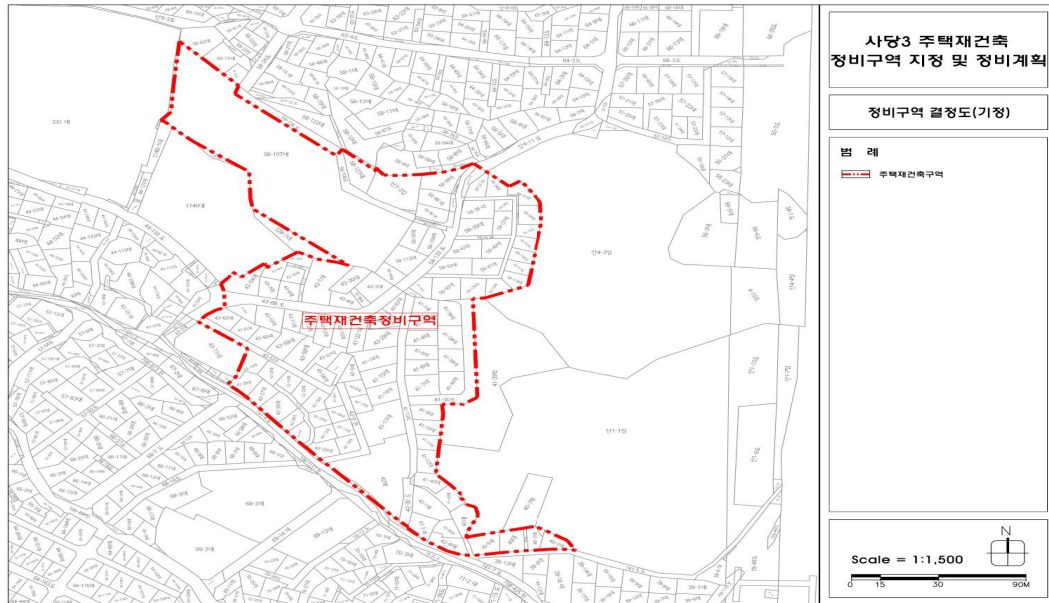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주택과(☎ 820-994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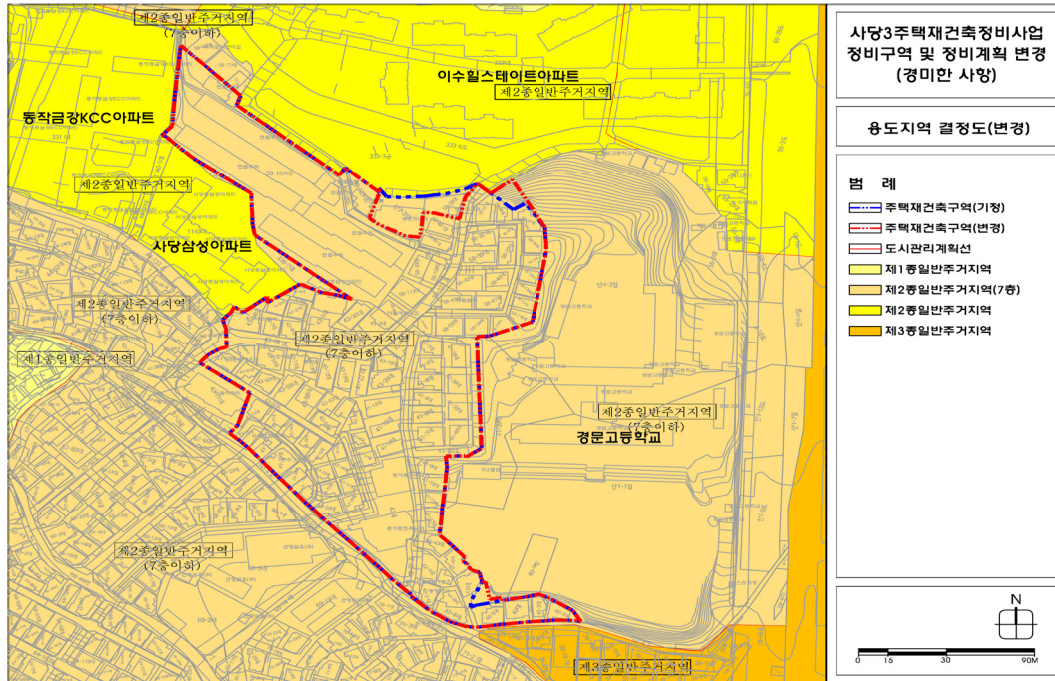
1) 기정



2)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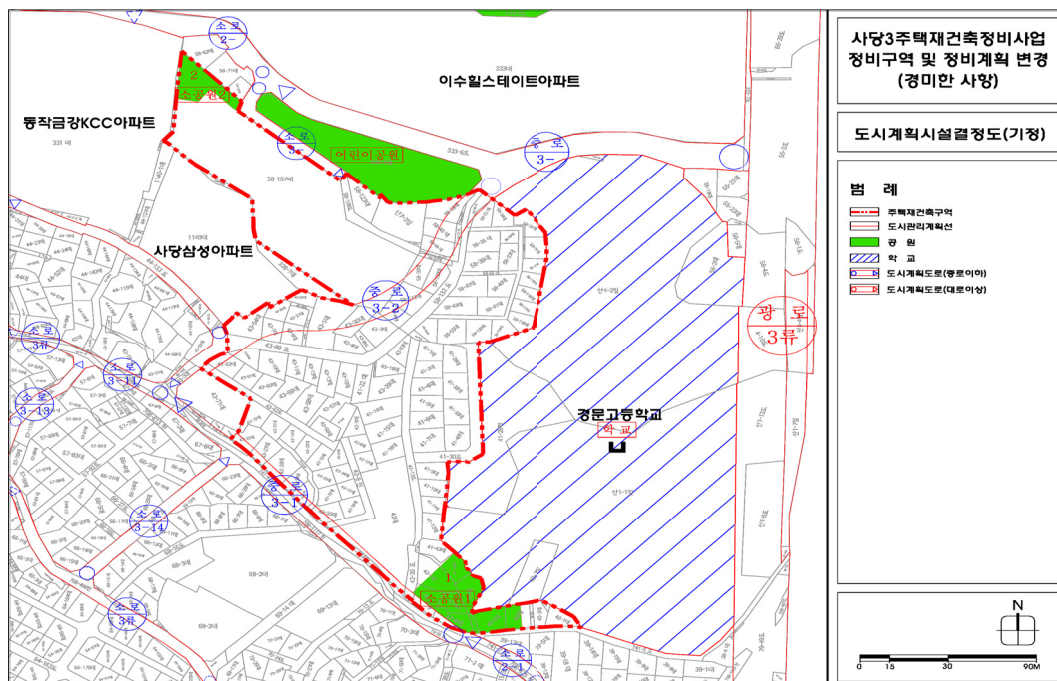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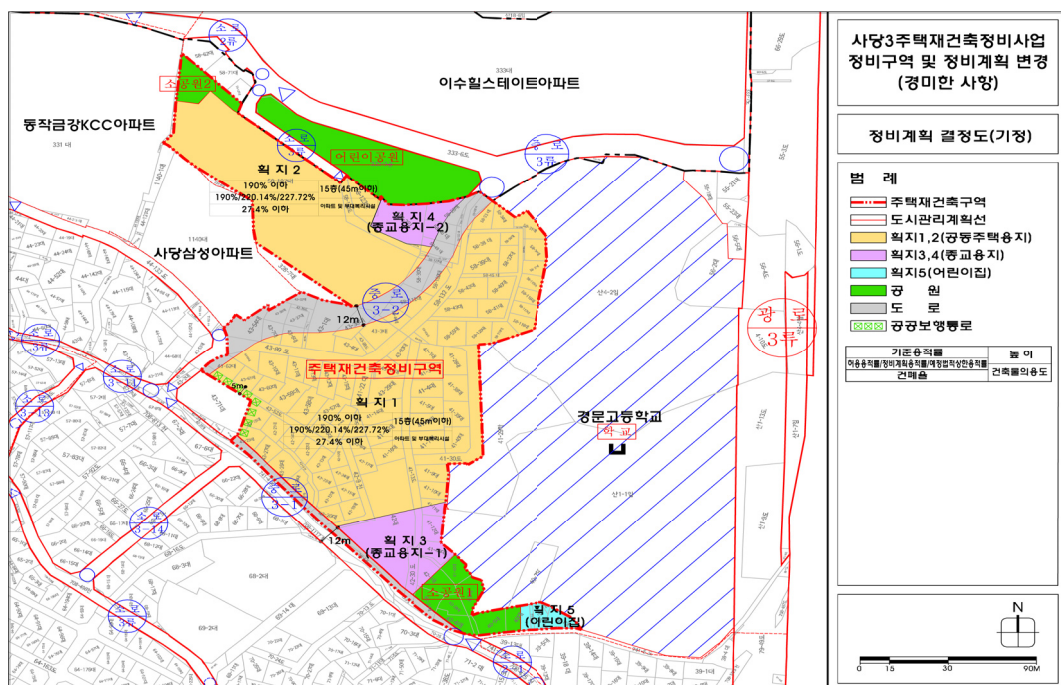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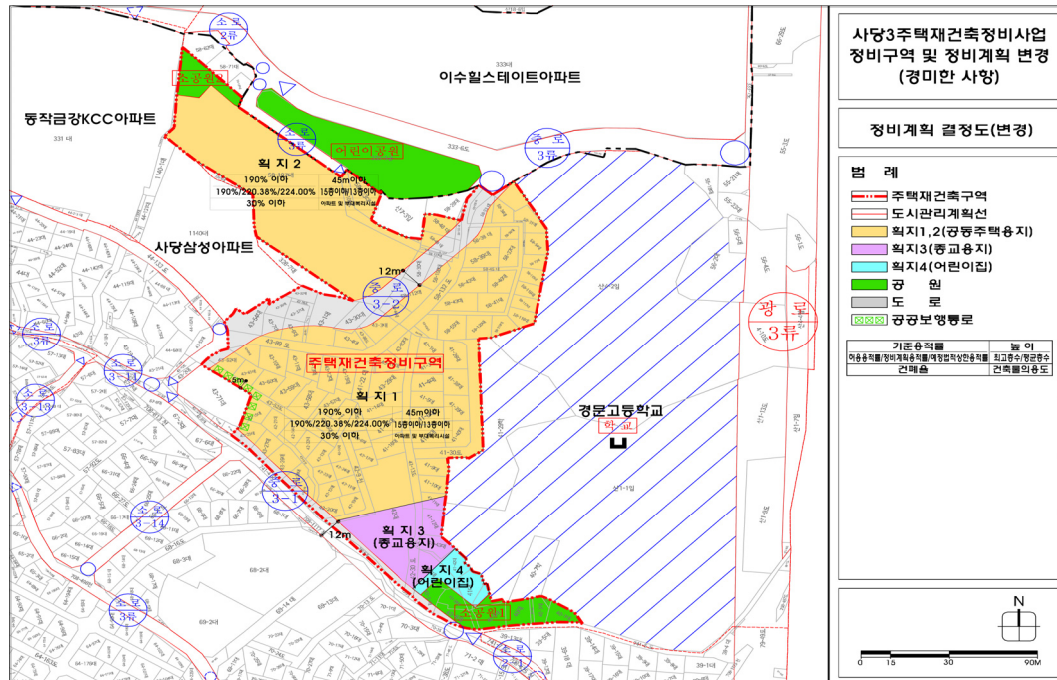


[illegible]

1) 기정



2) 변경



◆ 서초구고시 제2018-11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41호(2018.03.08)로 결정된 서초동 1737-3~반포동 118-14일 대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를 실제 설치될 지하심도에 한정하여 공간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변경	간선 하수도	서초동 1737-3	반포동 118-14	서리풀 공원	1.28	9,646.44	○ 유역분리터널 ■ 4.5m × 4.5m~◎ D6500mm ○ 중복결정 - 공공청사(1,188.40㎡) - 공 원(4,176.50㎡) - 도 로(469.40㎡) - 철 도(245.80㎡)

3. 입체적 결정조서(신설)

구분	시설명	위 치		입체적결정 규모		비고
		기점	종점	높이(해수면기준) (m)	면적(㎡)	
신설	간선 하수도	서초동 1737-3	반포동 118-14	· 높이 : +8.2 ~ +18.67 · 길이 : 1.28km · 폭 : 5.3 ~ 15.7	9,64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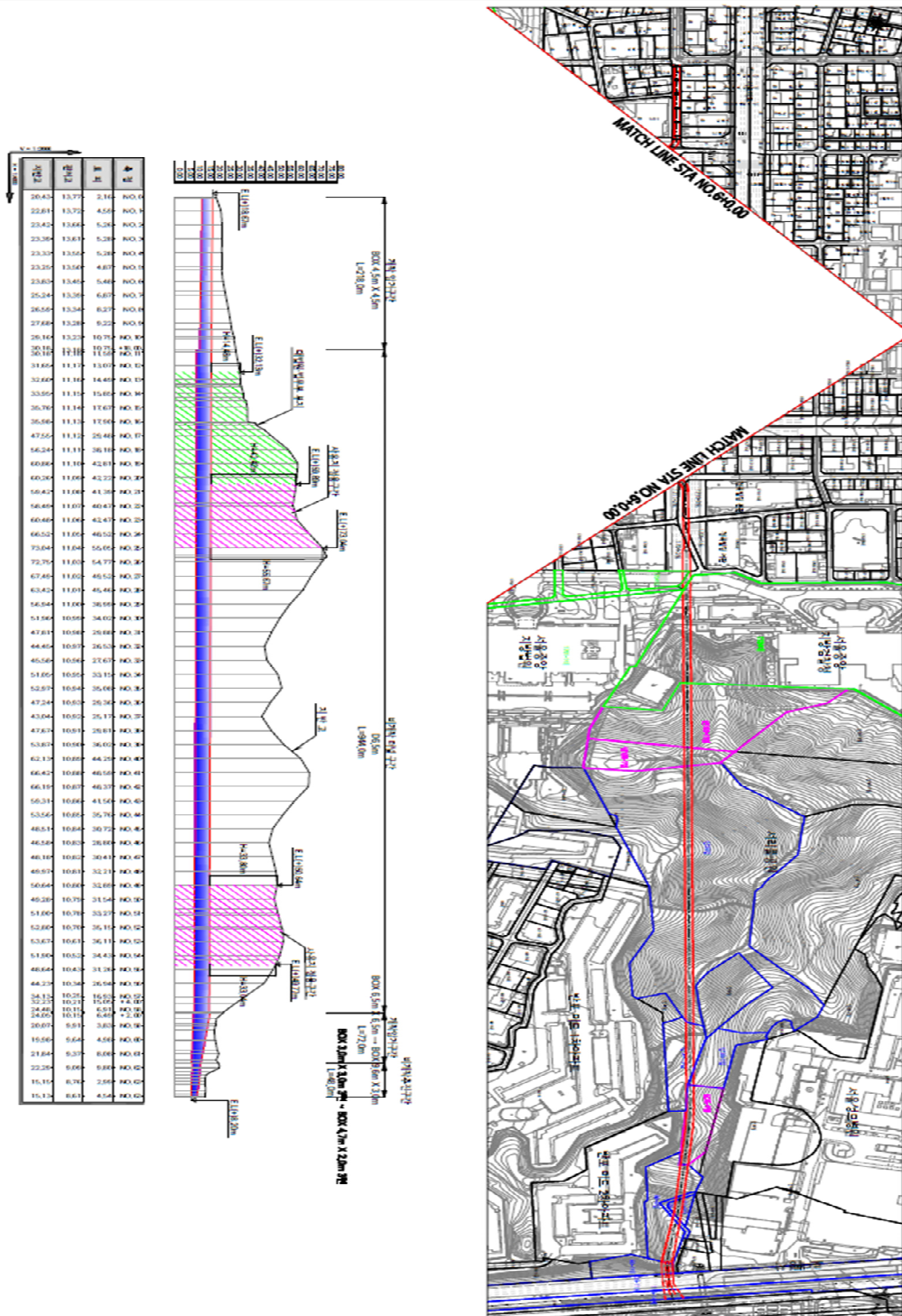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91)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포털(<http://www.seocho.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도면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도 (NON Scale)



◆ 강남구고시 제2018-75호

대치동구마을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2호(2013.11.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5-85호(2015.07.16.) 및 강남구고시 제2016-49호(2016.04.28.), 강남구고시 제2017-22호(2017.02.1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변경없음)

-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대치2동 977번지 일대	14,594.2	-	14,594.2	

2. 정비계획 변경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4,594.2	-	14,594.2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594.2	-	14,594.2	100	

-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594.2	－	14,594.2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2,137.9	－	2,137.9	14.6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공원 : 소공원
	도 로	1,542.4	－	1,542.4	10.6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 원	595.5	-	595.5	4.0	
택 지	소 계	12,456.3	-	12,456.3	85.4	
	택 지1	12,456.3	-	12,456.3	85.4	공동주택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383.6 (68.8)	대치동1012-57 (대치동1012-70)	대치동1012-81 (대치동1012-70)	일반도로	-
기 정	중로	3	7	12	국지 도로	236.2	대치동1012-70	대치동1012-73	일반도로	-

주1) ()는 정비구역 내 구간임.

나) 공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공 원	소공원	강남구 대치동 978 일대	595.5	-	595.5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어린이놀이터	◦15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167.41	-	167.41	-
경 로 당	◦ 15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50㎡ + (273 \times 0.1㎡) = 77.3㎡$	118.19	감) 2.89	115.30	-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경우 설치	575.27	증) 498.11	1,073.38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594.2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39	-	-	39	-	-

나) 건축시설계획

결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 정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594.2	택지	12,456.3	대치동 977번지 일대	공동 주택	60 이하	189.57 이하	208 이하	50 이하, 최고15층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 : 평균 1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273 (100.0%)		-			
			전용 60㎡이하		107 (39.2%)		임대 22포함			
			전용 60~85㎡이하		164 (60.1%)		-			
			전용 85㎡초과		2 (0.7%)		-			
심의완화사항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98.83%							
			◦ 층수완화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 : 7층 → 평균 13층이하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정비계획용적률(189.5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08.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6m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3.9.13) : 수정가결

◦ 건축계획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 투수성포장, 보도블럭, 트렌치 설치 시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재질 등 사용 고려
- 우수시 빗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수펌프, 저류용량 및 시간 등 방재대책 수립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4,594.2㎡	12,456.3㎡	2,137.9㎡	138.2㎡	1,434.1㎡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137.9\text{㎡} - 138.2\text{㎡} - 1,434.1\text{㎡} = 565.6\text{㎡}$ (총수완화 대상면적 대비 10.21%)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5,541.4㎡)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 : 170%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a)$ $= 179\% \times (1 + 1.3 \times 0.0454)$ $= 189.57\%$ • 정비계획 용적률 : 189.57%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08%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65.6 / 12,456.3 = 0.0454$ * 허용용적률 = 170% + 9%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신재생에너지설계) (향후 허용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 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 건축시설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고 (연면적)
기정	대치2동 977번지 일원	-	-	14세대	35.98㎡	1,148.43㎡ (1,147.85㎡)
				8세대	43.97㎡	
변경	대치2동 977번지 일원	-	-	14세대	35.88㎡	1,148.56㎡ (1,147.85㎡)
				6세대	43.99㎡	
				2세대	44.00㎡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08%	-
		정비계획용적률	189.57%	

구 분		내 용	비 고
	증가된 용적률의 50%	• 소형주택 건설 규모 $= (\text{예정법적상한용적률} - \text{정비계획용적률}) \times 50\%$ $= (208\% - 189.57\%) \times 50\% = 9.215\%$ 이상	-
	연면적 환산	• 연면적 $= 9.215\% \times \text{대지면적} = 9.215\% \times 12,456.3$ $= 1,147.85\text{m}^2$ 이상	-
기정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 계획 소형주택 공급면적 $= 1,148.43\text{m}^2 ((59.40\text{m}^2 \times 8\text{세대}) + (48.08\text{m}^2 \times 14\text{세대}))$ • 세대수 = 22세대 (8.06%), 전용면적 60㎡이하	-
변경		• 계획 소형주택 공급면적 $= 1,148.56\text{m}^2$ $((59.5518\text{m}^2 \times 2\text{세대}) + (59.2055\text{m}^2 \times 6\text{세대}) + (48.1588\text{m}^2 \times 14\text{세대}))$ • 세대수 = 22세대 (8.06%), 전용면적 60㎡이하	

7)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기존 : 226세대 • 계획 : 273세대 • 증가 : 47세대	

4.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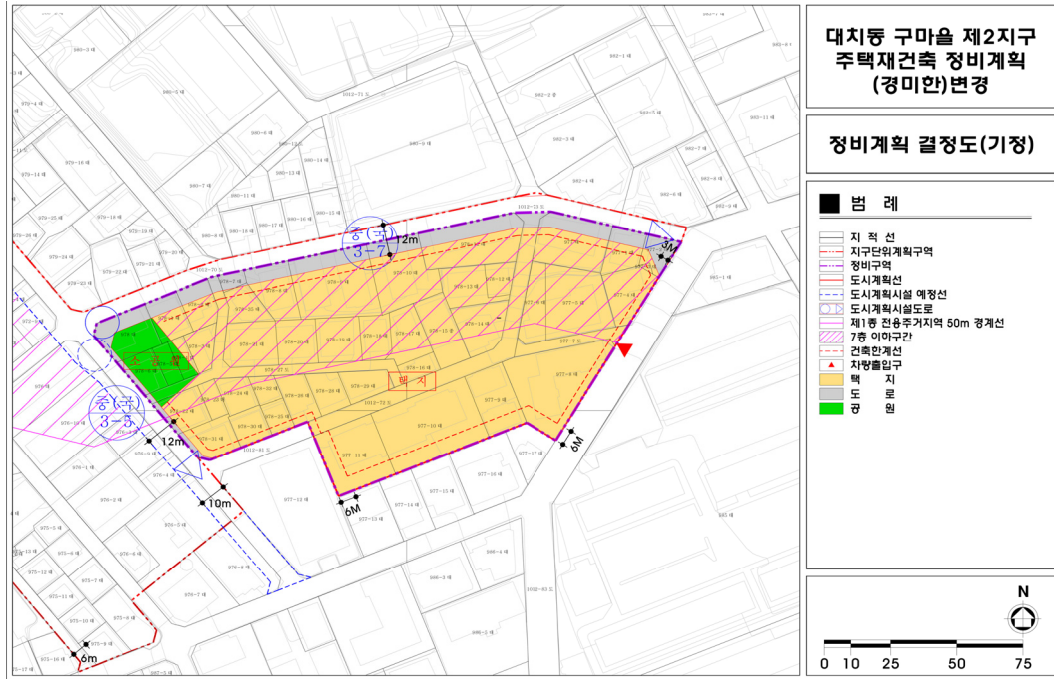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 02-3423-6072)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결정도>



※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의 변경으로 도면상의 변경은 없음.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18-46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8-37호(2018.05.10.)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된 통의동 7-3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종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7-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2) 명 칭 :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

다. 사업의 면적 : 419.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간

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2148-2864)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종로구 통의동	7-3	대	419.4	유인희	419.4분의 361.7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5-19				
					영보합명 회사	419.4분의 57.68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				

물 건 조 서

-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통의동마을마당 재조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해 당 없 음											

◆ 광진구공고 제2018-478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30호(1978.05.2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2-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6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광진구 광장동 리조트 풀앤스파 증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13,479.00㎡
건축면적	10,847.14㎡
연면적	16,560.65㎡
	20,181.85㎡
	36,742.50㎡
건축규모	지상4층, 지하2층
주요용도	운동시설(수영장), 근린생활시설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233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네트웍스(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과 지장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첨조서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광진구청 건축과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축과(☎ 02-450-77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광장동	5	59	임	1,482	1,482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2	광장동	5	63	임	300	300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3	광장동	5	5	임	783	783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4	광장동	5	104	잡	259	259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5	광장동	5	75	임	111	111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6	광장동	5	73	임	1,726	1,726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7	광장동	5	72	임	70	70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8	광장동	5	14	임	2,071	2,071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9	광장동	5	77	임	925	925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0	광장동	5	20	잡	239	239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1	광장동	5	21	임	382	382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2	광장동	10	3	수	476	476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3	광장동	542	1	대	486	486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4	광장동	7	1	대	490	490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5	광장동	23	1	대	216	216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6	광장동	8		대	225	225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7	광장동	21		대	608	608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8	광장동	542	4	대	109	109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19	광장동	20		대	162	162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20	광장동	22	7	대	2,305	2,305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21	광장동	5	51	임	54	54	SK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			
소 계					13,479	13,479					

◆ 성북구공고 제2018-599호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795호(1967.12.16)호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호(2018.01.2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259일대(북악산도시자연공원)

나. 공원면적 : 971,719m²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공원조성)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6-32일대

- 규 모 : 10,863.45m²

- 주요시설 : 잔디광장, 쉼터, 산책로 등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2241-3663)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18-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공원)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0(2017.09.0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제2018-561호(2018.04.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한 양천구 목동 629-6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원)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지도과(☎ 2620-3736)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양 천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천구 목동 629-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원)
 - 명 칭 : 목3동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공영) 및 공원 조성
- 다. 사업규모
- 주차장 : 연면적 3,295.83㎡, 지하 2층/ 지상1층, 100면
 - 공 원 : 2,190㎡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양천구 목동동로 105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년간
- 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양천구 목동 629-6번지 일원(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 소유권(수탁자) :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강서구 등촌로55길 6)
 - 소유권이외의 권리(근저당권자) : 신한은행 등촌역지점(양천구 공항대로 532)
- 사. 주차장 및 공원의 귀속 : 양천구로 무상귀속

◆ 구로구공고 제2018-8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고시 제84호(2018.04.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된 『오리로11길~서해안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 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오류동 332-22~294-2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오리로11길~서해안로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6~7m, 연장85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리로11길~서해안로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류동 293	대	130	4	김종우	구로구 오리로 11길 101				
2	오류동 293-2	대	160	19	황에서	구로구 오리로 11길 103				
3	오류동 294-1	전	281	118	이채원	구로구 연동로 13길 13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근저당권	
					황호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7번길 8,9동 205호	부천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지상권	
4	오류동 294-2	전	220	67	임점순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신기샛길 12-2				

※ 연번 1,2,3,4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정정 예정임.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리로11길~서해안로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291-3	건물	목조 및 유리	5	출입구	황복서	구로구 부일로5길 22-6 301호				
		가건물	천막	7	창고						
		데크	목재	1식	테라스						

일련 번호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 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수목	-	1식	수목	황복서	구로구 부일로5길 22-6 301호				
		웬스	메쉬웬스	1식	웬스						
		CCTV	-	1식	CCTV						
2	293-2	본건물	세멘트블록조	70	주택	황예서	구로구 오리로11길 103				
		가건물	함석	6	주택						
		담장	시멘트블럭	1식	담장						
3	293	장독대	시멘트블럭	5	창고 및 장독대	김종우	구로구 오리로11길 101				
		웬스 및 대문	메쉬웬스	1식	웬스 및 대문						

◆ 구로구공고 제2018-8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26호(1988.03.28.)로 변경결정고시, 구로구고시 제2016-16호(2016.10.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고시, 제2017-74호(2017.05.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7-58호(2017.04.13.)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구로구고시 제2017-123호(2017.07.27.)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구로구고시 제2018-45호(2018.02.22.)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구간 추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 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23-35~115-12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8m, 연장377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추가)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조서 : 변경없음										
아래항에 대하여 토지조서 추가										
1	가리봉동 110-22	대	317	39	남중희	양천구 목동 917 목동파라곤 109-1602				가리봉동 110-2
					백두기	구로구 구로동로2가길 26				
					백일광					
					송병년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0, 115동 2102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조성수	구로구 고척로60길 30, 105동 1104호	근저당권							

물 건 조 서(추가)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분할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당초조서 : 변경없음											
아래항에 대하여 물건조서 추가											
1	가리봉동 110-2	건물(1층)	철근 콘크리트조	15	주택	백두기 백일광	구로구 구로동로2가길 26				가리봉동 110-22
		건물(2층)	철근 콘크리트조	15	주택						
		대문	철제	1식	대문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2		건물(1층)	철근 콘크리트조	2	주택	이섭기	영등포구 구로동 808-14				
		대문	철제	2식	대문						
		계단	콘크리트	1식	계단						

◆ 서초구공고 제2018-820호

**서초구 양재동 102-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서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0호(2009.06.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76호(2011.03.17.)로 변경결정된 양재동 102-5·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서관)에 대하여 (주)케이씨씨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2-5·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사업
- 명 칭 : 양재도서관 건립사업(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시행면적	2,205.5㎡	
건축면적	1,055.45㎡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985.85㎡ (2,536.94㎡)	
건폐율	47.86%	
용적률	115.03%	
층수	지하1층/지상3층	
건축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건물동수	1동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주식회사 케이씨씨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27-8)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8년 5월
- 준공 예정일 : 2019년 8월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자치행정과(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건축과(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아.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5	학	17.3	17.3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6	학	2,188.2	2,188.2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자치행정과(☎ 02-2155-8636) 및 건축과(☎ 02-2155-6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18-74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우리구 관내 마천동 48-4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해 제2차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7일
송 파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18.5.17~5.31(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5)

다. 재열람공고 사유 : 당초 주차장으로 입안된 면적 88.0㎡에서 매각을 위해 분할된 면적 9.7㎡를 제외한 면적 78.3㎡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재열람공고 시행.

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결정 조서

■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마천동 48-4	-	증)78.3	78.3	-	

■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78.3㎡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서울시 체비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자 함.

마.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299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고시 제2018-1호

표준 규격 출하품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 품목 중 “총각무”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표준규격으로 출하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지정 사유 : 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문제 개선, 비위생적인 관리와 강서시장 내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함.

나. 지정 일자 : 2018. 6. 1.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천호대교)	선박 2척	천호대교 정밀안전진단	' 18.06.04.~ ' 18.06.08.	' 18. 05.0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09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광진교)	선박 2척	광진교 정밀점검용역	' 18.05.14.~ ' 18.05.20.	' 18. 05.0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 2척	성산대교 정밀점검 용역	' 18.05.21.~ ' 18.05.27.	' 18. 05.0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영동대교)	선박 2척	영동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18.06.07.~ ' 18.06.17.	' 18. 05.0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2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환경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원효대교 북단상류, 서래2교 하류)	1000㎡ 10㎡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	' 18.05.14.~ ' 19.05.13.	' 18. 05.0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3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기술	인천시 동구 송현동 129 산업유통센터 2/327	서울시계내 한강(잠원)	선박 1척 (기선1)	넙툰호 안전도검사를 위한 운항	' 18.05.10. ~ ' 18.06.09.	' 18. 05.0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4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번지	선박 2척 (부선2척)	정박대기	' 18.05.10. ~ ' 18.08.31.	' 18. 05.0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6호****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년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한강세븐수상레저 (대표 김태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개로 33 우성아파트 7-302	동작대교 ~ 한강대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61	수상레저사업	- 동력선 2척 (25㎡) 무동력선 4척	2018. 5. 9. ~ 2018.12.31.	2018. 5. 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8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잠실대교)	선박 2척	잠실대교 정밀점검 용역	' 18.05.21.~ ' 18.05.29.	' 18. 05.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19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내 한강 (성수대교)	선박 2척	성수대교 정밀점검용역	' 18.06.18.~ ' 18.06.22.	' 18. 05.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12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대교~ 신행주대교)	선박 1척	한강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조사 학술 연구 용역 진행	' 18.05.21.~ ' 18.12.31.	' 18. 05.14.

사업소공고**◆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8-117호****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8.5.18. ~ 2018.5.31.(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8.6.1. ~ 2018.6.14.(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대상내역

선택	세목 코드	세목명	과세 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성명/ 법인명	반송 사유	납세자기본 주소	납세자상세 주소
1	10- 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 04	000732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70,000	김*완	폐문 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	***호 (가양동, 가양 오피스텔)
2	10- 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 04	000728	이륜이상 동력장치 출입	50,000	문*운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길 **	***동***호 (궁동, 다청림 아파트)
3	10- 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18- 04	000729	이륜이상 동력장치 출입	50,000	한*석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	제**호 (금호동*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